

발간등록번호

11-1240000-000632-10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012년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용역 최종결과보고서

2012. 11.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연구
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외국인직접투자통계』 2012년 정기통계 품질진단” 연구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20일

계약기관 한국통계학회 조 신 섭 대표 ㉠

연구진

책임연구원 경기대학교 남경현 교수

연구원 경기대학교 최성호 교수

자문위원 수원대학교 정형철 교수
(통계분야)

연구보조원 경기대학교 안승호



품질보고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품질보고서

2012. 11. 20.

차 례

1. 통계개요	1
2. 통계품질정보	2
(1) 관련성	2
(2) 정확성	2
(3) 시의성/정시성	5
(4) 접근성/명확성	5
(5) 비교가능성	6
(6) 일관성	7
3. 통계작성방법요약	8
참고문헌	9

1. 통계개요

- 이 품질보고서는 통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통계기반 강화와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의 품질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지식경제부에서 작성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통계(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1520호)’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품질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결과물 수집절차 및 과정에 대한 요약을 제공한다.

- 본 품질진단은 2007년 1차 품질진단 이후 2번째로 시행된 정기품질진단이다. 품질진단에 앞서 1차 품질진단팀이 제시한 개선과제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통계청에서 발간된 국가통계 품질진단 매뉴얼에 따라 진단을 수행하였다.
 -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다. 우선 통계 생산 및 작성절차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통계생산자에게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한다. 또한 통계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통계이용자에게 통계품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통계수요와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접근성, 명확성과 관련성을 증진할 수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1962년부터 생산되었다. 2005년 국가통계(일반통계)로 지정되었고 현재 지식경제부에 통계생산에 관한 책임이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분석을 시행한다. 자료의 수집 및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관련 정보를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 동향비교 및 추세파악을 위해 분기마다 작성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속하는 모든 대상이 포함된다.

-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37개의 수탁기관(KOTRA 포함)을 통해 신고된 자료를 바탕으로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에서 해당분기 익월 15일 이전까지 보도자료를 공표하고 있다. 보도자료 및 통계 DB자료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및 e-나라지표, KOSIS등을 통해 이용가능하다.

2. 통계품질 정보

(1) 관련성(relevance)

○ 관련성은 작성·제공되고 있는 통계가 이용자들의 수요에 얼마나 부합하며 의미가 있는 결과를 생산하고 유용한 통계를 제공하는지를 의미한다. 즉, 이용자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의 반영 여부가 관련성과 직결된다.

○ 본 통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 24조에 의해 자료 수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보고서에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음을 명시하고 있다.

- 자료수집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신고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외국인투자자의 개념은 국내의 개인 외국인 투자자 및 외국인 사업가가 해당된다. 외국인투자자(개인 및 사업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2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주어진다.

○ 통계 이용자 및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반영을 위한 노력은 부족하지만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회의의 경우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며 지식경제부 판단 하에 필요한 경우에 개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문회의 결과는 따로 문서화하여 공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자들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 KOTRA와 지식경제부의 담당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보고통계로서 단순히 정책수립에 대한 참고자료로 수집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요자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노력이 미흡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 통계이용자의 입장에서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라 하면 실현된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식할 것이다. 그런데 통계의 실상은 투자계획 신고 기준으로 이루어져 통계이용자가 인식하는 개념과 괴리된다는 점에서 관련성에 문제가 있

다. 이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올해부터 신고금액과 도착금액을 함께 공표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자에게는 투자계획에 대한 신고 의무만 부과되어 있어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간 괴리가 발생한다. 도착 시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도착이 발생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신고-도착금액의 괴리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과대 집계되는 등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통계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도착 대비표

구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집행률 (B/A)(%)
	건수	금액(A)	증감률	금액(B)	증감률	
2008	3,745	11,712	11.4	8,388	6.7	71.6%
1/4분기	865	2,716	69.8	2,193	59	80.7%
2/4분기	1,025	1,832	3.5	1,904	16.7	103.9%
3/4분기	981	2,875	-2.6	2,163	-7.1	75.2%
4/4분기	874	4,289	2.2	2,128	-15.7	49.6%
2009	3,131	11,484	-1.9	6,750	-19.5	58.8%
1/4분기	788	1,677	-38.2	928	-57.7	55.3%
2/4분기	813	2,967	61.9	1,728	-9.3	58.2%
3/4분기	792	3,374	17.4	2,386	10.3	70.7%
4/4분기	738	3,465	-19.2	1,708	-19.7	49.3%
2010	3,109	13,071	13.8	5,414	-19.8	41.4%
1/4분기	714	1,541	-8.1	1,336	44	86.7%
2/4분기	795	2,792	-5.9	930	-46.2	33.3%
3/4분기	842	2,932	-13.1	1,102	-53.8	37.6%
4/4분기	758	5,806	67.5	2,046	19.8	35.2%
2011	2,707	13,674	4.6	6,550	21	47.9%
1/4분기	578	2,005	30.1	1,627	21.8	81.1%
2/4분기	661	3,359	20.3	1,271	36.6	37.8%
3/4분기	683	2,220	-24.3	1,477	34.1	66.5%
4/4분기	785	6,089	4.9	2,176	6.3	35.7%
2012	1,456	7,106	32.5	4,453	53.7	62.7%
1/4분기	714	2,346	17	1,786	9.8	76.1%
2/4분기	742	4,760	41.7	2,667	109.9	56.0%

○ 실제로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중을 나타내는 외국인 직접투자 집행률은 1을 크게 하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지식경제부는 2010년에 FDI 신고액이 130억 달러로 10년 만에 최고기록을 수립했다고 크게 홍보했지만(매일경제, 2011. 3. 28) 결과적으로 도착금액은 신고금액의 41.4%인 54억 달러에 그쳐 전년도에 비하여 19.8% 감소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신고-도착 차이와 2010년 4/4분기에 신고가 집중된 점을 이유로 들어 보도해명 자료를 발표하였다(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11. 3. 29) 그러나 최근 년도의 FDI 집행률을 보면 <표>에서 보듯이 2008년 71.6%, 2009년 58.8%, 2010년 41.4%, 2011년 47.9%, 2012년 상반기 62.7% 등을 기록하고 있어 FDI통계의 관련성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하고 있다.

(2) 정확성(Accuracy)

○ 정확성은 모집단을 측정한 추정치가 참 값에 얼마나 대표성을 지니는가를 의미한다. 참 값과 추정 값의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이다.

○ 자료검토는 기업정보보호를 위해 지식경제부에서 원 자료 제공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되는 자료와 보도자료를 비교·검토하였다.

○ 본 통계는 투자의 유형을 세 가지-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5년 이상의 장기차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로 분류하여 외국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한다. 표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개인 및 법인 투자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어서 무응답에 의한 오차 발생의 가능성은 적다.

- 수탁기관에 신고·접수된 자료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에 입력되어 해당 수탁기관, 대한국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 지식경제부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입력된 자료의 오류 발견 시에는 해당 수탁기관에서 입력당일 수정이 가능하고 당일 이후에는 KOTRA 또는 지식경제부에 원장변경 신청을 통해 수정이 가능하다.

○ 통계작성 기준의 변경 및 전문가 회의 개최는 모두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회의록 또한 작성,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료 입력은 INSC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나 자료 분석 및 공표에 있어 모든 자료입력이 엑셀을 통한 수기 입력으로 이루어져 반올림과 같은 수치 오류 및 최종 결과 입력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통계의 특성 상 통계의 정확성은 일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3) 시의성 및 정시성(Timeliness and Punctuality)

○ 시의성은 데이터가 조사되는 시점과 공표시점간의 시간 간격을 말한다. 정시성은 사전에 예고한 공표일정과 실제 공표일간의 차이정도를 의미한다.

○ 본 통계는 시의성과 정시성이 탁월한 통계이다. 매년 1월 회의를 통해 대략적인 공표시기를 정하고 해당 분기 익월 15일 이전까지 보도자료를 발간한다. 보도자료는 기준일 보다 일찍 공표되며 늦는 경우는 없다.

- 수집된 자료(외국인직접투자가의 신고서)는 입력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INSC에 취합되며 공표시점에 맞추어 발표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해당 보도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분석을 통해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공표된다.

- 보도자료의 공표는 해당분기 익월 15일 이전에 이루어지나 간혹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올해 3분기 자료부터 기존 보도자료 항목 이외에 동영상 보도자료에 함께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항목에 업데이트가 늦게는 수개월 이후에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가능성이 있다.

(4) 접근성 및 명확성(Accessibility and Clarity)

○ 접근성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 가능한지, 데이터의 형태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의미한다. 명확성은 자료의 생산부터 공표과정에 이르는 정보를 담은 메타데이터의 품질과 충분성 및 예

시 등의 수반되는 정보와 이용에 대한 조언 등을 나타낸다.

○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매 분기별로 매년 1월에 정해지는 연간 공표일정에 맞춰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한다. 해당 보도자료에는 담당자에 대한 정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동향과 그에 대한 전망치 도표 등을 수록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보도자료는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여 다양한 수요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온라인 보도자료의 경우 앞서 시의성·정시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영상 보도자료와 보도자료에 동시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자료접근에 있어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 또한 기존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가 업데이트되는 보도자료 항목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뿐만 아니라 지식경제부에서 공표하는 모든 자료가 함께 업로드되고 있어 지난 자료 검색에 있어 불편함이 있다. 자료 접근의 불편함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보도자료 제목이 일관성 없이 업로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 간행물에는 주요 용어정의, 보고절차, 자료수집절차 및 기준, 국제기준과의 차이점 명시등 사용자를 위한 배려가 미흡하다. 이는 통계 담당자들이 잠재적 수요자를 고려하기보다 내부보고와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서의 통계 목적만을 중시하고 있는데서 발생한다.

○ 2007년 1차 통계품질 진단팀의 제안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메타정보가 규칙적으로 갱신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금번 품질진단팀의 지적에 의하여 메타정보가 갱신이 이루어졌다.

(5)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 비교성은 시간과 영역(domain)을 넘어서 수집된 데이터가 서로 비교될 수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낸다.

○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국제기준이 아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 작성된

다. 한국은행에서 집계되는 자료는 국제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집계기준이 달라 비교가 불가능하다.

○ 수집된 데이터간 시계열의 비교 또한 불가능하다. 1962년부터 수집된 자료는 자료를 수집하는 법령 변경에 의한 자료수집 기준변경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그에 대한 공지 및 비교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 가장 최근 2010년 10월 5일 법령개정에 의해 투자금액의 기준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집계기준을 변경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의자료, 설명, 공지 등이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담당자의 인식 문제로 시계열 단절 가능성을 단순히 법령에 의한 기준변경으로서 통계의 작성 및 공표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 기준변경에 대한 근거 및 부가설명, 이용자들을 위한 공지 또는 안내가 필요하며, 내용 공표 및 기준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분석의 실시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원자료의 경우 KOTRA와 한국은행이 자료를 가공하여 제출한다. 다만 외부이용자에게는 지나친 원 자료공개의 제한이 비교성의 저하를 야기한다. 외국인투자가 정보 보호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원 자료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자료는 지식경제부 승인 하에 공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자료공개 요건에 대한 자료 또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실상 원 자료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직접 비교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일관성(Coherence)

○ 일관성은 작성방법이나 기초가 되는 자료들이 다른 유사 통계들이 동일한 현상 또는 경제활동을 얼마나 유사하게 표현하는가를 나타낸다.

○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서 가장 최하점을 받은 품질차원은 일관성이다. 유

사통계인 한국은행 통계와의 기준의 차이점은 문서화하여 보관하고는 있지만 해당 문서는 내부분서로서 이용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통계품질진단팀에게도 제공하지 않았다.

○ 통계 기준차이점의 발생 요인, 차이의 비교·분석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통계작성방법 요약

1) 조사목적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선행지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된다.

2)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외국인 투자가이다. 여기서 외국인인 법인 또는 개인은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를 말한다.

3) 조사항목

<http://www.kotra.or.kr/html/statistics.html>, 메타자료 참고

4) 조사대상 기간 및 시간

<http://www.kotra.or.kr/html/statistics.html>

5) 주요 용어

<http://www.kotra.or.kr/html/statistics.html>, 웹사이트 참조

참고문헌

<국내문헌>

통계청(2009),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통계청(2012),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해외문헌>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ummary Quality Repor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nual Surveys Releases May 20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ing UK companies, 2010 Release

<웹사이트>

- 1 통계품질관리 홈페이지 <http://kostat.go.kr/quality>
- 2 통계품질관리시스템 <http://narastat.kr>
- 3 통계청 홈페이지 <http://kostat.go.kr>
- 4 영국통계품질 프로그램 <http://www.statistics.gov.uk/quality>
- 6 영국노동시장 통계 <http://www.statistics.gov.uk/product>
- 7 OECD <http://www.oecd.org>
- 8 Eurostat <http://www.epp.eurostat.ec.eu.int>

최종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정기통계품질진단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 보고통계, 품질진단
연구기간	2012. 4. ~ 2012. 11.
연구기관	한국통계학회
연구진구성	남경현, 최성호, 정형철, 안승호
<p>본 요약문은 통계청이 주관하는 “2012년도 정기통계 품질진단 사업“의 통계 II 부문 진단대상 통계인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품질진단에 따른 최종결과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파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수립과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영향 분석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보고통계이다. 2. 본 연구는 정기통계 품질진단 절차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 대한 품질진단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과제를 도출한 후 개선지원 방안을 단기과제와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제안하였다. 3. 세부작성절차별 체계진단 결과에 따르면,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는 상당히 우수하고 사후관리, 통계설계는 양호한 수준이나 통계작성기획, 문서화 및 자료제공, 자료분석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다음은 품질차원별 진단결과이다. 우선 정확성, 시의성 및 정시성은 우수한 편이다. 그러나 투자계획 신고의 특성에 따라 관련성과 비교가능성이 미흡하며 이를 개선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접근성 및 명확성은 개선의 여지가 크며 단기에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다. 5. 진단결과에 기초를 두어 투자 신고-도착 괴리에 대한 대응, 국제통계기준에의 일치, 국민경제 영향 분석기반의 강화, 기타 개선과제 등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다. 6. 개선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개선지원방안을 제안하되 단기과제인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통계오류점검절차 개선, 이용자편의성 제고, 공포범위 확대 등에 강조점을 두어 개선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차 례

제 1 장 개요	1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1. 배경 및 목적	1
2. 진단의 방법: 통계품질의 차원 및 부문	2
제 2 절 통계 개요	8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연혁	8
2. 통계의 종류	9
3. 통계의 내용	9
4. 작성 체계 및 절차	17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17
1. 2007년 품질진단 결과 및 반영현황 점검	8
2. 금번 진단의 중점 사항	22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3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23
1. 품질관리기반	23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28
3.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38
4. 수집자료의 정확성	53
5.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62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73
1. 투자-신고 도착 괴리에 대한 대응	3
2. 국제통계 기준에의 일치	77
3. 국민경제 영향분석 기반의 강화	80
4. 기타 개선과제	81
제 3 장 개선지원	8

제 1 절 해외사례	87
1. 미국	87
2. 영국	89
3. 프랑스	90
4. 해외사례의 시사점	91
제 2 절 단기 개선과제	91
1. 단기 통계기반 확충	92
2. 자료수집의 정확성 제고	92
3. 공표 범위의 확대	93
4. 공표방법의 다양화	94
5. 이용수요 피드백 강화	95
제 3 절 중장기 개선과제	98
1. 중장기 통계기반 확충	99
2.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 해결	100
3.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101
4. 국민경제 영향분석 강화	102
참고문헌	104

표 목 차

<표1-1> 통계품질의 6가지 차원	4
<표1-2> 품질관리기반 진단	6
<표1-3>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6
<표1-4>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7
<표1-5> 수집 자료의 정확성 진단	8
<표1-6>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8
<표1-7>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0 1
<표1-8>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신주 등의 취득, 신주 등의 취득 변경)	2 1
<표1-9>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기존주식등의 취득, 기존주식등의 취득 변경)	3 1
<표1-10>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합병 등에 의한주식 또는 지분 취득, 장기차관)	4 1
<표1-11> 외국인직접투자의 조사체계	7 1
<표1-12>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과제 반영현황	9 1
<표1-13>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중장기 발전전략 반영현황	0 2
<표1-14>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단기 발전전략 반영현황	1 2
<표2-1> 통계작성 예산규모	4 2
<표2-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5 2
<표2-3> 조직의 통계품질 관리 실태	6 2
<표2-4> 통계작성담당자의 인식	6 2
<표2-5> 전문가 및 이용자의 직업군	0 3
<표2-6> 작성절차별 평점	9 3
<표2-7> 통계작성 기획 절차 진단 결과	9 3
<표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0 4
<표2-9> 보고통계 설계 진단 결과	1 4
<표2-10> 자료 수집 진단 결과	2 4
<표2-11> 자료 입력 및 처리 진단 결과	3 4
<표2-12>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4 4
<표2-13> 문서화 및 자료제공 진단	5 4
<표2-14> 2007년 품질진단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업로드 시기	6 4
<표2-15> 사후관리 진단 결과	8 4
<표2-16> 품질차원별 평점	1 5

<표2-17>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조사 신고(허가) 신청서 내용	6· 5
<표2-18> 수집되는 자료의 오류점검절차	8 5
<표2-19> 수탁기관 실무담당자의 교육 참석 여부	1 6
<표2-20>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공표유형	3 6
<표2-21> 공표자료 오류 점검결과	4 6
<표2-22> 수치지료점검표	4 6
<표2-23>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표	6 6
<표2-24> 용어해설 부분 점검표	7 6
<표2-25> 기타오류 점검표	8 6
<표2-26>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결과	9 6
<표2-27>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표: 이용자를 위하여	0 7
<표2-28>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표: 조사정보	1 7
<표2-29> 국제기준과 한국 FDI통계의 비교	8· 7
<표2-30> “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가칭) 수록필요 사항	8
<표2-31> 통계품질 개선과제 요약	6 8
<표3-1> 개선지원 방안 개요	7 8
<표3-2> 미국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주요 조사항목	8 8
<표3-3> 단기 개선과제: 주요 방향별 과제	1 9
<표3-4> 중장기 개선과제: 주요 방향별 과제	8 9

그림 목 차

<그림2-1>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내용선택 항목(출처: 외국인직접투자통계 DB)	8· 3
<그림2-2> 작성절차별 포트폴리오 분석	9 3
<그림2-3> 지식경제부 보도해명 자료	9 4
<그림2-4> 품질차원별 포트폴리오	1 5
<그림2-5> 보도자료 금액기준 표기 혼재 예시	6 6
<그림2-6> 자료 수집 방법 및 목적	1 7
<그림3-1> 해외투자통계 통계자료 활용법, 용어설명, 피벗정렬 우수사례	7 9

제 1 장 개 요

제 1 절 품질진단 개요

1. 배경 및 목적

국가통계(national statistics)는 한 국가의 경제, 인구, 사회, 환경 등 제반 분야에 관한 정보를 일반 대중과 정부, 그리고 기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작성된 기초자료를 말한다(U.N.(2003), p.5). 이러한 정보는 제반 분야의 발전과 세계 범위의 국가 간, 시민들 간에 상호 이해와 교류를 위하여 필수적이다. 한국 통계법도 국가통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경제·사회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통계법, 제 3조 1호).¹⁾

그런데 국가통계 또는 공식통계(official statistics)의 품질은 시민과 기업, 그리고 여타 조사응답자 등의 협력에 좌우되고 있다. 한편 대중이 이러한 공식통계를 신뢰하기 위해서는-독립성, 적절성, 신뢰성, 그리고 응답자 권리의 존중 등과 같은 - 기초적 가치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 UN은 이러한 가치와 원칙을 공식통계에 관한 기초원리(Fundamental Principles of Official Statistics)로 제정하고 있다.²⁾

이에 따라 한국 통계법도 통계작성의 기본이념에 대하여 “각종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공자원으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확성·시의성 및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

1) 이 때 "통계작성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통계법 제15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의 지정을 받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을 말한다(통계법, 제3조 3호).

2) Official Records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1994, Supplement No. 9 (E/1994/29), Chap. V.

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보급·이용되어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통계법 제2조 참조).

한국통계법은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의 제반과정에 대한 품질 진단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우선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이 있으며³⁾ 본 보고서의 품질진단도 이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일환이다(통계법 제9조).⁴⁾

통계청에서는 2006년부터 국가승인통계에 관하여 품질진단사업을 실시해 오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 관해서는 본 보고서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 진단사업의 결과이다. 본 보고서는 통계청이 발간한 2012년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에 의한 진단방법에 의하여 품질진단을 시행하고 지난 번 품질진단에서 제안된 개선방안 반영 여부를 점검한 후 진단절차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통계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통계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진단의 방법: 통계품질의 차원 및 부문

본 연구는 통계법 제9조의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규정과 통계청이 발간한 국가통계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의 진단방법에 의하여 시행되었다. 우선 통계품질 수준 측정의 기준으로서 통계청이 정하고 있는 6가지 통계품질 차원(dimension)을 적용하였다. 또한 진단의 대상부문으로서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는 품질관리기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등 6가지 부문을 채택하였다.

1) 통계품질의 차원

통계품질은 수요자의 사용적합성(fitness for use)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차

3) 작성주기가 10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통계의 경우에는 그 통계를 작성하는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실시할 수 있다(통계법 제9조).

4) 이외에도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매년 시행하는 자체통계품질진단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청장이 시행하는 수시통계품질진단이 있다(통계법 제10조 및 제11조)

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으로 정의된다(통계청, 2012, p.9). 통계관련 국제기구들이 아직 통계품질에 관하여 통일적인 차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이 정의하고 있는 6가지 차원⁵⁾을 적용하여 통계 품질을 진단하고자 한다.

가.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차원이다. “통계자료의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통계청, 2012, p.10)”를 의미한다. 통계이용자에게 의미가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통계의 관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목적의 명확한 설정, 이용자의 파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이용자 요구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나.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은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근사하게 측정한 정도(통계청, 2012, p.10)”를 의미한다. 모수와 추정치가 근접한 통계가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되는 것이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설정, 표집, 응답, 작성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표본조사의 경우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를 체계적으로 절감하는 수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다. 시의성·정시성(timeliness & punctuality)

시의성은 작성기준 시점과 결과공표 시점간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정시성은 계획된 공표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의 시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과공표 시점을 최대한 작성기준 시점에 근접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통계의 정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표일정의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정확하게 준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 비교성(comparability)

5)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진단 매뉴얼, pp.10-11.

비교성은 시간 간 또는 공간 간에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 간에 통계자료의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집계되어(통계청, 2012, p.11)” 비교가능한 정도를 나타낸다.

<표1-1> 통계품질의 6가지 차원

차원 명	개념정의	품질수준 제고방법
관련성 (relevance)	통계자료의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	통계목적의 명확한 설정, 이용자의 파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정확성 (accuracy)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근사하게 측정한 정도	모집단의 설정, 표집, 응답, 작성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최소화하는 노력
시의성·정시성 (timeliness & punctuality)	작성기준, 결과공표 시점간 차이가 최소화 정도 및 계획된 공표시기를 정확하게 준수하는 정도	결과공표 시점을 최대한 작성기준 시점에 근접; 공표일정의 사전예고제 시행 및 준수
비교성 (comparability)	시간 간 또는 공간 간에 통계를 비교할 수 있는 정도	국제기준을 준수, 통계기준 개정 등의 경우 경과기간의 기준조정
일관성 (coherence)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 유사한 정도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연간통계와 분기(월)통계 등 결과의 유사성 점검, 관련 통계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완화
접근성·명확성 (accessibility, clarity)	통계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 통계 작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의 정도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 속보 전송, 검색기능 추가; 통계작성의 방법과 절차, 통계자료의 이용방법, 상위자료(meta data) 등 제공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진단 매뉴얼, pp.9-12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통계의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 간 비교의 경우 통계작성과 공표에 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간 간 통계의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기준 개정 등의 경우 경과기간의 기준조정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마. 일관성(coherence)

일관성은 동일한 현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들이(통계청, 2012, p.11)” 유사한 정도를 의미한다.

통계자료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잠정통계와 확정통계, 연간통계와 분기(월)통계, 개별 통계조사 결과와 국민계정 내용 등 동일한 현상을 상이한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결과를 비교하여 그 결과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관련 통계 간의 격차가 심각하다면 그 원인을 규명하고 완화하는 시정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바.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 clarity)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명확성은 통계 작성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정보제공의 정도를 나타낸다.

통계자료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등(통계청, 2012, pp.11-12)”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통계자료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계작성의 방법과 절차, 통계자료의 이용방법, 상위자료(meta data)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 통계품질의 부문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주요 부문별로 통계품질을 진단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통계청이 정의한 6가지 부문을 채택하였다.

가. 품질관리기반

품질관리기반은 통계를 작성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 필요한 인프라이다. 이 부문에 대해서는 주로 통계의 기본 현황, 인적 자원 및 물적 자원의 통계작성 여건,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등을 점검한다. 품질관리기반 진단에 포함되는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은 <표 1-2>과 같다.

<표1-2> 품질관리기반 진단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
기본현황	통계명, 작성목적, 근거법령, 작성주기, 공표주기, 조사대상, 조사 기준시점, 조사방법, 조사 직원 구분, 공표시기, 간행물명, 통계작성체계	품질관리기반 현황 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면담조사
통계작성 여건	통계인력현황 및 전문성, 예산규모, 정보자원현황	
조직 관리실태 및 통계담당자 인식	기관장 및 담당자의 의지, 방침, 인적관리, 업무량 등	
통계작성담당자 면담내용	통계 작성 시 애로사항, 통계 품질관리기반 확보를 위해 개선할 사항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pp.16-17.

나.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통계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통계가 우수한 통계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는 통계이용자의 통계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고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되고 있는 실태를 의미한다. 이 부분의 진단을 위해서는 해당 통계의 실제 이용자인 전문·일반 이용자로 구성된 표적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s)을 시행하고 이 통계를 활용하여 정책 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 등의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진단에 포함되는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은 <표1-3>과 같다.

<표1-3>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 실태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
전문가 및 주요 이용자의 요구사항	조사방법, 표본의 적절성, 통계의 활용도, 추가 필요사항,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요구사항	표적집단면접 (FGI) 2회
	정책 입안자, 학술연구 경험자를 대상으로 이용자 불만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 파악	심층면접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pp.18-21.

다.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는 통계작성이 통계의 작성목적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 세부 절차의 체계를 의미한다. 이 부분의 진단을 위해서는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를 이용하여 진단하기로 한다. 점검표는 통계작성의 형태에 따라 조사통계용, 보고통계용, 가공통계용으로 나누어진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보고통계로 분류되므로 보고통계용 점검표를 활용하기로 한다.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에 포함되는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은 <표 1-4>과 같다.

<표1-4>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
사전자료 제출	·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작성을 위한 진단근거자료 제출	세부 작성절차 점검표를 활용한 연구진진단
연구진진단	· 통계품질지표에 의한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 작성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pp.22-26.

라.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가 통계이용자의 수요를 잘 반영한다고 해도 수집된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무의미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의 진단을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과정에 오류가 없었는지, 자료의 입력이 올바르게 되었는지, 보고과정 중 절차상의 오류는 없었는지 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외국투자가, 외국환은행, KOTRA, 지식경제부 등의 경로를 거치면서 작성되므로 자료의 신고, 수리, 입력, 집계 등의 과정에 오류를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수집자료의 정확성 진단에 포함되는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은 <표 1-5>와 같다.

<표1-5> 수집 자료의 정확성 진단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
보고통계의 현장조사 정확성 점검	· 자료수집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 자료 보고시의 문제점 및 애로·개선·건의사항을 진단 · 보고단계별 오류 발생 요인 파악	통계 관리자 및 담당자, 응답자 면담을 위한 현장방문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pp.27-30.

마.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모든 전 단계 절차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더라도 공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공표 활동이 미흡하다면 통계목적 달성이 어려울 것이다.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은 공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의 유형과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을 예방하여 통계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특성을 의미한다. 이 부분의 진단을 위해서는 공표자료 오류 점검 및 이용자 편의성 점검 등의 방법을 활용한다.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에 포함되는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은 <표 1-6>와 같다.

<표1-6>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진단내용	세부 진단항목	진단방법
공표자료 오류 점검	간행물, DB, 보도자료 등을 근거자료와 비교하고 표기 오류 또는 누락 등을 확인	점검지침에 따른 발간물 점검
이용자 편의성 점검	이용자의 편의성을 돕는 통계정보(주석, 그림, 도표 등)의 수록 여부와 이용편의성 점검	

자료: 통계청(2012), 국가통계 품질관리 매뉴얼 pp.31-34.

제 2 절 통계 개요

1. 통계의 작성목적 및 연혁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외국투자가)이 한국 기업(설립 예정 기업 포함)과 지속적인 경영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실행하는 투자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개방도를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동향을 파악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관련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된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외국인투자의 선행지표이다.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통계는 외국인직접투자의 한국경제 기여도 및 연관성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경제에 가져다주는 기술이전, 경영기법 전수, 고용창출, 연관산업 성장 등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넓은 시각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외부문이 한국경제의 전망에 대하여 가지는 판단을 추측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2. 통계의 종류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행정통계로서 보고통계, 계속통계이다. 1962년도부터 생산되고 있으며 법적 근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4조의 규정이고, 2005년에 통계법 제15조 및 제17조에 의하여 일반통계로 승인되었다(승인 제 11520호: 2005.6.28). 지식경제부(무역투자실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가 작성하는 전국 범위의 통계이며 분기별로 작성하여 공표된다.

3. 통계의 내용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대상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Ⅱ-2.절 참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져 있으며 이 규정에 의한 요건을 만족하는 외국인투자자는 모두 보고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1) 통계작성 대상: “외국인투자”의 정의

외국인직접투자 작성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세 가지 유형으로 정의된다. 이를 요약하면 <표1-7>와 같다.

<표1-7> 외국인직접투자의 정의

투자형태 구분	개념 정의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등")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 포함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외국인투자자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가.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 또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주식등")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이 1명당 1억 원 이상(취득금액 기준)이면서 투자비율 1명당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인 경우만을 포함한다. 다만 투자비율이 10% 미만이라도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 무한책임사원, 감사등)을 파견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나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에 포함한다.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외국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는 것도 포함된다.

나. 5년 이상의 장기차관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외국인투자자, 또는 앞의 해외 모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자본출자 관계라 함은 해외모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이 외투기업에 50%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해외모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해외모기업(또는 해

외모기업의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50%이상 출자한 기업, 외국인투자가가 50%이상 출자한 기업 등을 말한다.

다.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외국인이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 포함)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이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즉 과학기술 분야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일 것,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그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도 외국인투자에 포함된다. 이때에는 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비영리법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즉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 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민간 또는 정부 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이다.

(2) 통계작성 내용: 신고사항

외국투자자는 외국인투자정책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에 투자내용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신고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입지 등 각종 지원조치의 전제가 된다. 그런데 투자유형에 따라 신고사항이 다소 상이하다.

우선 신주 등의 취득, 신주 등의 취득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을 요약하면 다음 <표1-8>와 같다. 신주 등의 취득의 경우에는 외국투자자와 내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규투자인 만큼 투자형태나 투자목적, 투자방법의 신고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09년 7월 31일 개정으로 특수목적회사(SPC) 여부와 최종지배모기업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SPC여부 표기를 기피하는 경우 공란으로도 접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

<표1-8>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신주 등의 취득, 신주 등의 취득 변경)

외국인투자 유형	신고의무 사항
신주(新株) 등의 취득(법 제5조)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SPC 여부 · 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내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소(본사 및 공장·사업장, 금번 투자지역), 하고자 하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비율) ○ 투자형태: 법인설립(단독, 합작), 개인사업(단독, 합작), 유상증자(내국법인, 외투기업), 비영리법인출연(단독, 합작) ○ 투자목적: 공장설립·증설, 사업장설립·증설, 인수합병, 비영리법인에 출연 ○ 투자방법: 현금, 자본채, 주식, 부동산, 채권, 산업재산권 등 ○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수량, 1주당 액면가, 액면총액, 1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
신주 등의 취득(법 제5조) 변경 -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명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 SPC 여부 · 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비율) ○ 투자방법 ○ 변경내용: 이미 신고(허가)된 내용, 변경 후 내용

※ 시행규칙 제2조~제5조는 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첨부증빙서류 규정

다음으로 기존 주식 등의 취득, 기존 주식 등의 취득 변경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은 다음 <표1-9>와 같다. 기존 주식 등의 취득이나 취득 변경의 경우에는 신주 등의 취득 등에 비하여 신고의무 사항이 적다. 다만 주식(지분)취득자만이 아니라 주식(지분)양도자까지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6) KOTRA, Invest Korea 홈페이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의 질의응답 사항을 참조할 것.
<http://insc.kisc.org/adm/notice/rea-d022.jsp?seqno=53&ipage=4>

<표1-9>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기존 주식등의 취득, 기존 주식등의 취득 변경)

외국인투자 유형	신고의무 사항
기존주식 등의 취득(법 제6조) -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등 발행기업: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SPC 여부, 주소, 공장(사업장)소재지, 하고 있는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주식(지분)취득자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SPC 여부·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주식(지분)양도자의 상호 또는 명칭 ○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의 비율) ○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수량, 1주당 액면가, 액면총액, 1주당 취득가액, 취득총액 ○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 액면가액, 취득가액, 비율
기존주식 등의 취득(법 제6조) 변경 -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SPC 여부·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주식 등 발행기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 변경내용: 이미 신고(허가)된 내용, 변경 후 내용

※ 시행규칙 제2조~제5조는 각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첨부증빙서류 규정

한편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장기차관에 대한 신고의무 사항은 다음 <표1-10>와 같다. 합병 등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당, 상속·유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등에서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장기차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한하고 있는데 금액, 조건 등 차관의 내용이나 현금, 자본재 등 차관의 방법, 그리고 차관의 용도를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표1-10> 외국인투자 유형별 신고의무 사항(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장기차관)

외국인투자 유형	신고의무 사항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또는 지분 취득(법 제7조) - 시행규칙 별 지 제5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자본금, 사업자등록번호(본사), 주소(본사 및 공장·사업장), 하고 있는 사업(한국 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 외국투자자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및 국적, SPC 여부·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취득한 주식(지분)의 내역: 종류, 수량, 1주당 액면가, 액면총액, 취득가액, 취득총액 ○ 취득사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무상증자, 배당, 상속·유증,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기타 ○ 취득 후 외국인투자가 소유주식(지분)의 수량, 금액 및 외국인투자비율 * 합병 등: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 매입·상속·유증·증여, 합병·주식교환·회사분할·주식배당, 전환인수·교환 등
장기차관 - 시행규칙 별 지 제6호 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도입자의 상호 또는 명칭, 주소 ○ 차관제공자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주소, SPC 여부·최종지배모기업(상호, 국적) ○ 차관의 내용: 차관금액, 차관조건(거치기간, 상환기간, 연이자율, 기타) ○ 차관방법: 현금, 자본재, 기타 ○ 차관용도 ○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 이미 신고 된 내용, 변경 후 내용

(3) 공표내용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신고의무 사항을 모두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 그 중에서 자료 공개의 문제점이 적은 통계를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공표수단은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 배포이다.

가. 연도별, 분기별 투자실적 총괄

우선 분기별 투자실적을 건수, 금액, 증감률로 집계하여 발표하고 있다. 투자실적 총괄의 경우 신고기준과 도착기준(잠정금액) 실적을 병행하여 공표하였다.

(단위 : 건, 백만불, %)

구분	신고기준			도착기준	
	건수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나. 산업별 투자실적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로 나누어 건수, 금액, 비중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

구분	제조업			서비스업			기 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다. 업종별 투자 실적

산업을 더 세분하여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각각 11개와 9개의 업종으로 구분하여 집계·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건설
		식품, 섬유·직물·의류, 제지·목재, 화공의약, 비금속광물,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운송용기계, 기타제조	도·소매(유통), 음식·숙박, 운수·창고(물류),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임대,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공공·기타서비스	전기·가스·수도, 건설

라. 지역별 투자 실적

외국투자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지역별 집계를 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미주지역, 아주지역, EU지역의 주요 국가별로 투자실적을 집계하여 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국제협력기구	미주지역	아주지역	E U	기타지역
		미국, 캐나다,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기타	일본,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중국, 대만, 기타	독일, 영국,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기타	

마. 형태별 투자 실적

외국인직접투자를 형태별로 집계하고 있다. M&A형과 Greenfield형으로, 그리고 후자는 다시 공장설립형, 사업장설립형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

구분	M&A형			Greenfield형						
				공장설립형		사업장설립형		소 계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비중

바. 규모별 투자 실적

투자프로젝트의 규모별로 집계하고 있다. 1백만불 미만, 1백만불-1천만불, 1천만불-1억불, 1억불 이상 등으로 구분하여 집계·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1백만불 미만		1백만불~1천만불		1천만불~1억불		1억불 이상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 시점별 투자 실적

투자 시점별로 신규투자인지, 증액투자인지, 장기차관인지를 구별하여 집계·공표하고 있다.

(신고기준, 단위 : 백만불, %)

구분	신규투자		증액투자		장기차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아. 지자체별 투자유치 실적

지자체별 투자유치 실적을 평가하고 지역경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광역 지자체별로 투자유치실적을 집계·공표하고 있다.

(단위 : 건, 백만불, %, 신고기준)

구분	광역자치단체(시·도별)
----	--------------

4. 작성 체계 및 절차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조사는 외국인투자가의 신고를 수탁기관이 수리하여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입력하면 지식경제부 서버에 실시간으로 집계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KOTRA와 35개 외국환은행(국내은행 17개, 외국은행 지점 18개)이다.

<표1-11> 외국인직접투자의 조사체계

외국인투자가	신고
↓	
수탁기관 (KOTRA 또는 35개 외국환은행)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별도	외국인투자신고서 접수 후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에 입력
↓	
지식경제부	집계·분석

지식경제부는 매 분기 첫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신고된 금액을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을 통하여 집계하고 매 분기 익월 15일까지 공표한다. 이때 공표방법은 전산망(인터넷)과 지식경제부 보도자료(간행물)이다. 이에 따라 통계자료의 검색은 KOSIS-외국인직접투자통계 사이트와 온라인간행물인 지식경제부 보도자료로 가능하다.

제 3 절 중점 진단사항

1. 2007년 품질진단 결과 및 반영현황 점검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대한 제1차 품질진단이 있었다. 당시 품질진단 결과 제시되었던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반영현황을 개선과제, 중장기 발전전략, 단기 발전전략으로 나누어 점검해 보았다.

(1) 개선과제

우선 개선과제의 경우 통계작성에 대한 교육 강화나 지역통계 작성에 관하여 제기된 개선과제는 비교적 적절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위탁작성기관인 KOTRA가 수탁기관(외국환은행) 통계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교육을 연2회 정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을 개편하여 지자체별 신고·도착·등록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가 조회하여 확인하도록 개선하였다.

<표1-12>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개선과제 반영현황

과제	개선방안	반영현황(지식경제부 입장)
유형별 분류 재정의	M&A형과 Greenfield형 투자의 구분 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정의	- 미반영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분석	외국인 직접투자의 국가경제 기여 도 분석	- 외국인투자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경제기여도 분석
통계작성에 대한 교육 강화	KOTRA 주관 교육에 의하여 수탁기 관의 FDI 통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시행 - FDI통계의 의의와 작성방법 교육	- 수탁기관 통계담당자 대상으로 통계 교육 연2회 실시
통계작성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	산자부, 한국은행 등 기관마다 다 른 기준을 통일시키거나 차이점을 해결하도록 하고 데이터의 공유로 중복 업무 해소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데이터 및 메타자료 게재	- 지경부는 한국은행과 외국인투자관련 자료를 교환하여 통계 신뢰성을 상호 제고 -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데이터 및 메타자료 게재 완료
지역통계 작성	지방자치단체별 외국인직접투자 통 계자료의 수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와 통계자료 협조	- 지자체별 신고·도착·등록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가 조회, 확인하도록 시스템 개편
FDI 통계용어 해설	출자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 제 공 및 산출근거, 분류기준, 용어해 설 등 보완	- 미반영

한편 일부과제는 반영이 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
직접투자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입구조나 고용구조에 대한 조사를 결
여하여 경제기여도 분석에 제약이 되고 있다. 통계작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관련하여 지경부가 한국은행과 외국인투자관련 자료를 교환하여 통
계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은통계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안 되어 실시간 자료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에
데이터와 메타자료가 게재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아직 통계
이용자 편의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직 전혀 반영되지 못한 과제도 있다. 유형별 분류 정립을 위하여 M&A
형과 Greenfield형 투자의 구분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 재정의할 것을 주문한
제언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을
용어해설을 보강하고 출자목적에 따라 세분화된 자료를 제공하며 산출근거
를 공표하라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 중장기 발전전략

중장기 발전전략은 과제의 성격 상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1차 품질진단이 이루어진지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아직 뚜렷한 개선의 결실이 없는 실정이다.

우선 작성 통계항목 분류 개선과 관련하여 지경부와 한국은행의 분류기준 일원화를 위하여 도착기준에 의한 통계 생산관련 시스템 갱신방안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산업별, 국가별, 형태별 도착통계의 작성·공표가 추진되고 있다. 최근 지경부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관리를 도착기준 중심으로 개선하고 신고기준을 병행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을 밝혔다.

<표1-13>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중장기 발전전략 반영현황

과제	발전전략	반영현황
작성 통계항목 분류 개선	지경부와 한국은행의 분류기준 일원화를 위하여 도착기준에 의한 통계 생산관련 시스템 갱신	- 산업별, 국가별, 형태별 도착통계의 작성·공표 추진
국제기준 부합 및 국제투자대조표(IIP) 작성	국제기준과의 부합 정도를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제기준에 맞추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명시,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	- 국제투자대조표(IIP)는 지경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작성
외국인투자 연감 발간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동향, 경제정책과의 관련성, 통계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	- 연도별 통계검색 기능 제공

특히 2012년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FDI) 통계를 도착금액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는 것이다.⁷⁾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FDI통계 및 국제투자대조표(IIP) 작성과 관련하여 통계공표에 국제기준과의 부합 정도를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국제기준에 맞추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기준과의 차이를 명시하여 국제투자대조표를 작성할 것이 요청되었다. 아직 전면적인 국제기준의 통계작성이

7) 지경부(2012) '1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보도자료, 2012.1.13.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경부가 FDI통계를 KOTRA와 협조하여 국제기준에 접근하도록 재조정된 통계를 IMF, OECD 등 국제기구에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제투자대조표(IIP)는 지경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투자의 개념과 동향, 경제정책과의 관련성, 통계자료를 그래프 등으로 다양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외국인투자 연감 발간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러한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지경부나 KOSIS 홈페이지에서 연도별 통계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수준이며 이용자편의 요청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단기 발전전략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단기 발전전략은 상당부분 반영이 완료되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이 남아 있다. 우선 통계매뉴얼 정비를 위하여 통계작성 매뉴얼의 체계화 작업에 의하여 작성의 방법과 절차를 문서화할 것이 요청되었다. 이에 따라 KOTRA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수탁기관 신고·등록업무 매뉴얼과, 투자통계시스템(INSC) 매뉴얼을 완비하였다.

<표1-14> 2007년 품질진단 결과 중 단기 발전전략 반영현황

과제	발전전략	반영현황
통계 매뉴얼 정비	통계작성 매뉴얼의 체계화 작업에 의하여 작성방법과 작성절차의 문서화	- 수탁기관의 신고·등록업무 매뉴얼, 투자통계시스템(INSC) 매뉴얼 완비
인터넷을 통한 공표의 일관성 유지와 이용자 수요 파악	산자부,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등에 게재되는 자료 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및 상호 링크시키고,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 파악 반영	- 미반영
통계의 메타정보 제공	통계작성 지침, 작성요령, 전체 개요, 전문용어 해설 등 구비 및 제공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데이터 및 메타자료 게재 완료

또한 통계의 메타정보 제공을 위하여 통계작성 지침, 작성요령, 전체 개요, 전문용어 해설 등을 구비하여 제공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탈에 데이터 및 메타자료의 게재를 완료하였다.

정책목적에 의한 행정통계이다보니 이용자 편의성이 매우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지적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공표의 일관성 유지와 이용자 수요 파악을 통하여 지경부,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탈, e-나라지표 등에 게재되는 자료 간에 통일을 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상호 링크시킬 과제가 제기되었다. 또한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반영하라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이용자의 필요나 편의성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2. 금번 진단의 중점 사항

무엇보다 신고, 도착 기준의 불일치가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신고기준과 도착기준 통계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신고기준에서 도착기준으로 전환하거나 두 기준의 통계를 병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FDI 통계 국제기준과의 괴리가 문제이다. 국제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나 고품질의 통계 작성을 위하여 국제기준을 수용하는 통계개편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FDI의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영향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 기반이 취약하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 통계제도를 강화 개편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관리, 경영통계의 패널화, 경영실태조사의 보강을 통하여 FDI통계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넷째,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미미하다. 심지어 이용자가 어느 집단인지도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용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공표범위의 확대, 원 자료 이용가능성 제공, 자료검색의 편의성 개선 등의 실용적인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 2 장 품질진단 결과

제 1 절 부문별 품질진단 결과

1. 품질관리기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통계분야는 국제수지·외국환으로 분류되며, 지식경제부가 외국인투자 촉진 및 정책지원을 목적으로 자료의 수집과 조사를 시행한다. 자료의 분석과 공표는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가 수행하지만, 실질적 업무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에 위탁하여 자료의 수집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작성 책임은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가 지지만, 전반적인 자료의 수집과 관리는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이 수행하고 있기에 두 기관에 의해 작성된 품질관리기반 현황을 바탕으로 품질관리기반을 진단하였다.

품질기반의 진단과정은 먼저 담당기관이 사전에 제출한 품질기반관리 현황표를 통해 현황을 파악·분석하고, 담당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통계작성 여건, 물적 자원 여건,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1) 통계작성 여건

1) 인적 자원 여건

자료의 수집과 통계의 작성·관리에는 다수의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통계자료의 수집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KOTRA 투자종합상담실의 경우 해당 부서의 31명 중 2명이 본 통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임 전문위원 1인이 외국인투자통계에 대한 전반을 관리하고 대리 1인이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및 통계자료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의 전체 업무대비 통계업무 전담비율은 선임위원이 50%, 담당 대리가 80% 정도로 관리 인원은 적지만 비교적 높은 업무 전담비율을 보이고 있다.

KOTRA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담당자들은 해당 직렬에 응시하여 입사하였기 때문에 보직 변경 없이 근무한다. 따라서 현 담당자들의 보직근무 기간은 각각 7년 4개월, 8년 4개월로 상당히 오랜 기간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에 따라 현 담당자들은 통계업무에 관한 전문성과 업무 지속성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학 전공자가 아니며, 통계관련 교육 이수 실적을 결여하고 있는 한계가 있었다.

지식경제부 투자유치과는 총 11명 중 1명이 외국인투자통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담당 주무관은 해당 분기의 1일부터 말일까지 수집된 자료를 익월 15일까지 분석·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현 보직 이전에 통계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없으며 현재 4개월째 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부서 내에서 담당하는 직원은 1명에 불과하지만 통계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응답해 높은 업무전담 비율을 보인다. 그러나 지식경제부의 경우에는 순환보직 대상이어서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았고, 현 담당자 역시 통계학 전공자도 아니며 통계관련 교육 이수 실적 또한 없었다.

(2) 물적 자원 여건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업무의 위탁을 위하여 연간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외국인투자통계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 설비예산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2-1> 통계작성 예산규모

(단위: 천원)

	2009년	2010년	2011년
자체실시			
인건비			
외부기관 위탁	30,000	30,000	30,000
인건비			
합 계	30,000	30,000	30,000

자료수집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0조 3항에 근거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국내 외국환은행 17개 지점, 외국은행 18개 지점,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및 KOTRA)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통계의 생산과 관리, 서비스 등 일체의 통계업무 과정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위해 구축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을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INSC프로그램은 IBM 9131-52A P520 서버에 그 기반을 두고 있으며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하기 위한 기본 소프트웨어로 DB2 프로그램언어가 사용되고 있다.

<표2-2> 통계작성관련 정보자원현황

통계업무단계	통계생산	통계관리	통계서비스
시스템 명칭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		
운영장비	Server: IBM 9131-52A P520, DBMS: DB2		
통계분석패키지	해당사항 없음		

2)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

품질관리기반의 진단을 위하여 각 기관 담당자에게 제공된 품질관리 현황표에 통계작성담당자의 평가의견을 리커드 5점 척도(매우 그렇다↔전혀 아니다)를 이용하여 자가진단을 요청했다. 평가항목은 총 10문항으로 조직관리 실태에 관한 질문 5문항과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에 대한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질관리 현황표는 KOTRA에서 1차로 작성을 실시하고 2차로 지식경제부에서 작성을 완료하였다. 이러한 현황표를 바탕으로 담당기관 방문 면담을 통하여 두 기관의 조직관리 실태 및 통계작성 담당자의 인식을 파악하였다.

(1) 조직의 통계품질 관리 실태

조직의 통계품질 관리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된 항목은 조직 리더의 통계품질관리 의지와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해당기관의 경우 대부분 5점(매우 그렇다)에 응답을 하여 평균 4.8점으로 조직의 리더 및 조직구성원이 품질관리에 대해 가지는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3> 조직의 통계품질 관리 실태

문항	지식경제부 및 코트라
1. 기관장의 모범적 역할 수행	5
2. 기관장의 품질관리 필요성 인식 및 지속적 품질개선 추진의지	5
3. 기관장의 품질관리 비전 이행 방침 및 수립	5
4. 품질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관리	5
5. 담당 직원의 품질관리 참여도	4

(2) 통계담당자의 인식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업무에 대한 통계담당자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통계업무량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정보자원 확보의 적정성, 통계교육의 필요성, 통계작성 과정에서의 품질고려의 필요성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앞의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KOTRA와 지식경제부의 응답은 평균 4.0로 상당히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표2-4> 통계작성담당자의 인식

문항	지식경제부 및 코트라
6. 기타 업무대비 통계 업무량의 적정성	4
7. 통계에 배정된 예산의 적정성	4
8. 정보자원 확보의 적정성	5
9. 통계관련 교육이수의 필요성	3
10. 통계작성과정에 있어 품질 고려의 필요성	4

배정된 예산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적정성에 4점 ('그렇다')으로 응답한 이유는 통계의 정보수집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하여 수탁기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어 자료조사를 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작성담당자 또한 기관장과 마찬가지로 통계 작성에 있어 품질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통계작성 담당자의 애로사항 및 개선사항

품질기반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담당자들과 면담을 시행한 결과 외국인직

접투자통계는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유치 성과목표와 연관되어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정책의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어 작성기관의 기관장뿐만 아니라 담당직원까지 품질관리의 필요성 인식과 개선의지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자료수집은 1962년 해외차관을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시작되었고, 2005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통계로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국가통계 작성이 시작된 시점부터 KOTRA에서 근무를 시작한 통계업무 담당직원들은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의 유지를 위해 순환보직 없이 해당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 단순 신고 및 보고 목적으로 조사되던 자료가 통계목적에 의해 작성되기 시작한지 7년째이며, 금번이 두 번째 품질진단이다. 연구진이 면담을 통해 파악한 담당자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개선의 어려움

본 통계는 법령에 기초한 신고서에 의해 자료가 수집되는 보고 통계이다. 따라서 담당자들은 통계 작성을 함에 있어 품질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법규의 개정 없이는 통계의 개선이 어려운 한계를 가진다고 응답하였다. 담당자의 견해와 같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 품질 개선은 관련법 개정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통계품질의 개선을 위하여 법개정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용자를 위한 편의성, 관련성, 접근성·명확성과 같은 품질차원의 경우 법 개정 없이도 개선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측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신고-도착금액간의 괴리

현재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신고-도착금액간의 차이는 외국인투자가가 법률에 의해 출자목적물의 납입 등 최초 도착이 이루어진 시점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외에는 도착 시 신고의무가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최초 도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하면 되도록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어 신고시점에 따라 해당 월, 분기 별 도착금액이 가변성을 가지게 된다. 신고-도착통계의 괴리로 인하여 외국인직접투자 규모의 과대 집계가 이루어지고 사후관리 미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국제기준과 불일치는 지난번 품질진단 때에도 이미 제기되었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에 따라 OECD, IMF 등 국제기구에 제출할 때는 KOTRA의 투자종합상담실과 지식경제부의 투자유치과에서 작성된 통계를 KOTRA 투자정보팀과 지식경제부의 투자정책과 주관으로 한국은행의 협조를 받아 통계를 재가공하여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7년 품질진단에서도 국제기준과 부합정도, 차이점을 명시하고, 가능한 국제기준에 적합한 통계 생산을 제안하였지만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4) 통계 작성 인력의 부족

KOTRA의 통계작성 담당자는 2명으로 통계작성과 수탁, 수탁기관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다. 더욱이 그 중 1명은 외국인투자 관련 상담 등 투자유치 업무를 겸하고 있어 사실상 통계업무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명의 통계작성 담당자가 35개의 수탁은행(국내은행 17개, 외국은행 18개)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대한 수탁업무 관리, 입력된 자료의 오류검토 등 모든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업무가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인력부족은 통계관리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의 관리가 소홀해지는 연유가 되었다.

이러한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품질관리기반은 해외직접투자통계에 비하여 매우 취약하다.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부속 연구기관인 해외경제연구소를 설치하여 박사급 인력 6명이 해외투자 통계를 작성 및 공표, 조사·분석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

본 통계는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촉진을 위한 선행지표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수집된 자료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⁸⁾와 온라인 DB에 데이터를 수록하는 방식을 통해 공표된다. 자료의 공표 이후에 기업, 일반이용자들과 같은 수요자는 언론에 의해 보도되는 기사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수록된 보도자료, 온라인 DB자료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정책목적과 보고목적으로

8) 지식경제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도를 요청하기 위해 작성되어 보내지는 자료를 일컫는다.

만 통계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의 자료접근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현대 통계품질진단에서 일반인 수요 및 요구사항의 반영 정도는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기업경영정보 유출문제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 자료의 공개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수립·학술목적을 위해 자료공개를 원하는 이용자의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고 그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 마냥 수요자의 요구를 외면 할 수는 없다.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사항이 법적 허용 범위 내에서의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의 파악을 위해 전문가로부터의 다른 전문가를 추천 받아 스노우볼링(snowballing) 방식을 적용하여 면접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진단하기 위해 표적집단면접(FGI: Focused Group Interview) 2회, 심층면접(depth interview) 2회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와 통계에 대한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조사하였다.

FGI는 전문가, 일반인 이용자를 두 분류로 나누어 진행했다. 전문가 FGI에는 해당통계를 이용하여 정책수립 및 평가 학술연구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였다. 이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통계로부터 충분히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일반인 FGI의 경우 통계의 이용경험이 있는 일반인, 대학원생, 연구원을 대상으로 통계자료 이용의 편의성과 만족도에 관한 내용을 중점으로 연구진이 회의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면접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된 FGI에서 나온 요구사항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표적집단면접

면접대상자는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스노우볼링(snowballing)방식으로 선정되었으며 해당통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 정책연구·학술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6명, 통계에 관심을 가지거나 학술목적을 통해 이용경험이 있는 이용자 6명의 직업군은 다음 <표2-5>와 같다.

<표2-5> 전문가 및 이용자의 직업군

전문가 직업군	일반인 직업군
교수 4명	연구원 4명
연구원 2명	대학원생 2명

전문가집단에 속한 교수의 경우 경영학, 경제학, 국제관계학과 등 다양한 학과에 소속되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심도 깊게 이용하며 학술연구 및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한 적이 있는 4명을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 연구원 또한 지역통상팀 전문연구원, 성장산업동력센터 소장 등 2명을 선정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한편 일반인집단의 경우 통계를 자주 접하며 과거 업무를 위해 외국인직접투자통계를 1회 이상 사용해본 연구원 4명과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 관심을 가지고 학술적 목적을 가지고 본 통계를 1회 이상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하여 일반 수요자의 의견을 구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회의는 두 차례 모두 각각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연구진은 사전조사와 품질기반현황 점검표를 기반으로 작성된 각 통계의 현황·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참석자들에게 사전 발송하였다. 회의 참석자들에게 표적집단면접 이전에 제공한 첨부자료를 읽어볼 것을 당부하였으며 문제점에 대한 가능한 개선방안을 일부 정리해 올 것을 요청하였다. 이는 한정된 시간 안에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점 및 이용자 요구사항 반영실태를 최대한 파악하기 위한 조치이다.

회의자료는 <부록>에 수록된 것과 같이 신고금액과 실제투자 금액(도착기준)간의 괴리, 통계기준과 국제기구가 권장하는 국제기준의 불일치, 국민경제 영향 분석에 필요한 통계지표의 미흡을 주된 문제점으로 선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는 공표 방법의 다양화, 공표방법의 확대, 이용수요의 파악 및 요구사항 반영 강화의 검토를 제시하였다. 이에 참석자는 위 논점에 대한 답변과 연구진이 준비한 통계의 목표, 용도 및 범위, 통계 생산과정, 통계 공표와 활용의 편리성, 내용의 충실성, 문제점 및 개선의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문항의 답변을 준비하였다.

1) 전문가 집단 면접 결과

(1) 정확성

품질진단팀의 인식과 동일하게 전문가들은 통계수치와 현실간의 괴리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였다. 통계의 정확성이 문제시된 주된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에 있어 신고는 강제사항이지만 도착의 경우 보고가 강제사항이 아니며 최초 도착 시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도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실과 괴리된 수치는 정책의 활용 및 학술연구에 있어 신뢰를 하고 사용하기 힘들다는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수치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등록 이후에도 매번의 투자 도착에 대하여 강력한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통계작성기준을 신고기준에서 도착기준으로 변경하거나, 정책목적(신고기준), 통계목적(도착기준) 두 가지 유형으로 통계를 작성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목적에 충실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지식경제부의 외환전산망 접근을 허용하거나 투자주체에 고유의 ID를 부여하여 수집된 자료와 외환전산망의 실제 금액이 실시간으로 동조화되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적 사후관리와 투자형태 변경으로 인한 투자 철수 및 재유입 과정에서의 중복 계상 방지 등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여 투자 도착 및 거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다섯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리의무를 부여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의 개선방안 중 도착금액 보고에 강력한 의무 부과, 투자신고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는 방안은 외국인투자가에 대한 추가적 규제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에 관해 다른 전문가는 규제 목적이 아닌 통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니 외국인투자가의 양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통계수치의 현실적합성 제고 및 외국인투자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있었다.

(2) 비교성

전문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통계가 유사통계 및 국제기구에서 제공되는 통계와 통계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제공되는 통계와 UNCATD,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발행되는 자료의 경우 순유입기준으로 작성되는 반면, 지식경제부의 통계는 신고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정책목표와 국제기구의 국제수지 통계목표의 차이에 기인한다. 결국 국·내외에 비교 가능한 통계지표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은 국제기준과의 부합여부를 점검 및 통계이용에 관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국제기준인 OECD통계기준(Benchmark definition)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계를 작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다른 의견으로는 정확성에서 제안되었던 두 가지 방식으로 정책목적(신고기준)의 통계와, 국제수지 통계 목적(도착, 순유입 기준)으로 구분하여 병행 작성하는 방안 또한 제시되었다.

(3) 관련성·명확성

관련성·명확성에 관하여 이용자를 위한 편의성 부족과 원 자료에 대한 지나친 접근제한이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다. 먼저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통계 수요자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부터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통계DB의 경우 카테고리(category)별로 분류 지정되어 현재의 시스템을 조건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보도자료와 DB에 국한되어 있는 공표방식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면 정기적으로 외국인투자통계집을 발간하여 주요 용어의 해설 및 정의를 수록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현재 중분류까지 제공되는 자료를 조사된 세세분류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직접투자통계가 외국인투자가를 대상으로 조사 시행되는 만큼 외국인투자 수요자를 위한 영어버전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원 자료 공개에 관한 문제의 논점은 국민경제 영향 분석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원 자료는 지식경제부의 허가 하에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자료를 실제로 제공받아 사용해본 전문가는 거의 없었다. 연구목적으로 자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일이 걸리거나 가로합/세로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집되는 자료가 일부만 공표되는 문제점 외에도 신고 서상에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입·고용 구조 등의 상세지표가 자료수집에 누락되어 있어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민경제 영향 분석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한 원 자료의 공표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실태 조사를 보장하여 투입·고용 구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대안이 제시되었다. 관련 법상 자료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원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만 출력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예산 및 인력관리의 문제로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경우 이 서비스기능이 구축되어 있는 한국통계진흥원에 위탁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2) 일반인 FGI 결과

(1) 정확성

일반인 집단 역시 신고와 도착금액 간의 차이 발생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문제점은 동일하게 인식하였으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신고와 도착 기간의 차이가 적은 기업에게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투자실행을 촉진시키자는 의견이 있었다.

국제기구의 순유입기준 통계를 보면 경기불황으로 투자가 줄어들고, 큰 금액을 투자했던 투자가가 철수를 하고 그만큼의 신규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혹은 해당 분기에 마이너스 수치가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수치는 신고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인집단은 투자금액의 철수를 반영하는 사후관리의 부실이나 통계조작 등에 대한 우려가 표명되었다. 이의 해소를 위해 도착기준으로의 통계기준 전환 또는 투자기업의 자금도착 및 회수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사후관리의 개선과 관련된 다른 의견으로는 관리 목적의 추가조사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 만이라도 표본 조사를 도입하여 관리하자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2) 관련성·명확성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이용자보다는 외국인직접투자촉진을 위한 선행지표 및 지원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주목적이기에 이용자

편의성에 대해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실례로 M&A와 Green Field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정의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Green Field가 P&A를 포함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DB자료 이용시 대분류노드를 사용자가 원하는 하위단계까지 확장시키고 이를 엑셀파일로 변환하여 다운로드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IT기반 시설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목적에 상세 파악하거나 자금의 투입구조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수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는 외국인직접투자 지원정책에 보다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고 후자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함이다. 개선방안으로는 신고양식의 투자목적 항목을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 및 자본의 투입구조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경제영향 분석의 자료로 이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끝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소국경제는 외부 경제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이러한 외부효과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현재 분기별로 제공되는 보도자료 공표시기를 월별로 전환하거나 혹은 DB에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만이라도 분기에서 월별로 전환할 것을 요구되었다.

3) 심층면접

전문가 및 일반인 표적집단면접이 이후에는 제시된 안건 및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주요사항을 선정,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의 대상자는 관련 학위 전공자로 관심 연구 분야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관이 있으며 통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를 섭외하였다. 심층면접은 각기 1시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이 되었으며 연구진과의 일대일 면접으로 이루어 졌다.

심층면접 대상자들은 원 자료(raw data)의 공개 및 통계수치의 정확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한 심층면접자의 경우 원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비싸게 구매해서 이용을 하고 있었다. 법적제한 때문에 다른 정보의 추가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료 정도는 유료제공 혹은 온라인 공표를 통해 제공하여 비교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확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신고금액과 실현된 투자금액의 차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는 투자신고 이후 내부경영사정 또는 외부영향으로 인해 투자

를 실현하지 않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금액을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가 주 원인으로 지적했다. 다른 문제점은 투자기업의 사후관리의 미비를 언급했다. 사후관리는 신고-도착은행이 동일하지 않아 외국인 투자 금액의 추적이 불가능한데서 그 문제가 기인된다. 특히 지분양도 신청 후 자금회수가 발생할 때 투자가의 자금회수에 대한 보고의무가 없기 때문에 투자자금의 철수 여부의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일반인 FGI에서 제시된 사후관리가 불가능할 경우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표본조사의 도입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했다. 외부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는 외국인투자의 특성상 표본의 범위 및 대상을 선정하기 어렵고, 정책목적상 수집되는 자료이므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외국인투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정 자료 요청시 경제현황과 흐름을 파악하고 수요자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부재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특정 자료 요청시 DB 자료에 접근을 하여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자료를 추출하여야 하는데 현 프로그램 담당자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현황 및 흐름까지 파악하는 전문성은 갖추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공표자료가 보도자료 외에 전문한 실정이라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해야 하는 간행물의 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내용의 충실성에 있어 조사항목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신고서가 모기업 여부부터 투자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국민경제 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및 투자목적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유사통계와 관련해서는 국내 통계의 경우 한국은행에서 국제투자대조표를 위해 작성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수출입은행에서 작성되는 해외직접투자통계, 해외 통계의 경우 OECD, UNCATD에서 발간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한국은행 및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자료의 경우 수집기준이 다르며 보고통계가 아닌 가공통계이므로 지식경제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비교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출입은행에서 작성하는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통계와 성격이 다른 Out-bound 통계이지만 이용자를 위한 편의사항 및 해외투자를 하는 국내기업의 관리 부문에 있어서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심층면접자 대상자들은 연구진과 당사자들이 인식한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통계 수치 정상화

통계기준을 신고금액이 아닌 실현된 투자금액으로 변경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비교성을 높이고 신고금액보다 뒤늦게 실현되는 도착금액간의 괴리를 줄이는 것을 가장 중요시 했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지원 및 투자 가능성 파악을 위해 불가피하게 신고기준을 유지해야 할 경우 ①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한국은행과 함께 외국인직접투자기업 및 기업가에게 개별 고유ID를 부여, 관련기업 데이터를 추출하여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수집된 실제자료와 정책목표를 위해 수집되는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괴리를 줄여나가는 방안, ②수집된 Stock 혹은 Position Flow를 누적 해 놓은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여 이를 통계자료로 사용하는 방안, ③외국인투자 정책지원을 위해 정책목적별로 투자를 구분하여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는 투 트랙(two-track)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통계 수치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과제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게 현장점검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부여하여 은행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② 지정거래 은행제도의 도입

지정거래 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해당업무에 있어 외국환거래 유치실적을 통해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고-도착은행을 동일시하여 해당은행에 책임을 부여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업무에 있어 긍정적인 동기를 부여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후자의 경우 통계의 정확성을 증진시키는데 일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기반의 확충

심층면접자들은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품질관리기반이 취약하다고 조언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와 통계전문가를 증원하여 이용자 수요를 파악하고 특정 자료 요청시 현재 외국인직접투자의 현황과 흐름을 이해하고 수요자가 요구한 자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전문가를 증원, INSC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 및 업데이트를 통해 수치오류의 점검 및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켜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배정하여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프로그램 서버를 확충하여 접근성·관련성을 높이고 입력 항목에 자금의 성격, 구체적 내용, 출자금, 투자

금의 출처를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항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전문가가 수탁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④ OECD 통계기준(Benchmark definition)의 준수

도착기준으로의 전환은 국제기구와 기준을 통일하여 타 국가·산업과 비교를 용이하게 한다. OECD Benchmark definition에 최대한 부합하는 통계의 작성시 국제기구에 자료제공시 들어가는 인적·물적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⑤ 원 자료의 공표범위 확대

원 자료의 제한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3항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는 누설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 자료에 대하여 지나친 접근 제한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심층면접자들은 원 자료 공개 시 외국인투자가 줄어들까봐 우려하는 지식경제부의 우려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이에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의 기준을 명시하고 공개가능한 범위내의 원 자료 제공을 통해 국민경제영향 분석을 뒷받침할 필요가 크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세세분류까지 수집되는 데이터를 중분류까지만 공표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산업 효과를 분석하고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 목적을 상세하게 파악하여 정책지원방안 연구나 국민경제영향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⑥ 온라인 검색기능 강화 및 추가 공표자료 발간

본 통계는 보고통계로 지정되어 있는데 업무담당자들이 보고 목적에만 충실하여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우선, 보도자료에 공표되는 M&A, Greenfield와 같은 용어의 설명을 제시하고 자료 수집의 근거가 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을 명시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용자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DB상에 내용선택이 아래 <그림 2-1>과 같이 범주화되어 있어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검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다.



<그림2-1> 외국인직접투자통계 내용선택 항목(출처: 외국인직접투자통계 DB)

3. 세부작성절차별 체계

(1) 세부작성절차별 체계진단

세부작성절차별 체계진단은 통계작성의 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통계생산 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여 작성하는지를 매뉴얼의 품질지표에 따라 진단하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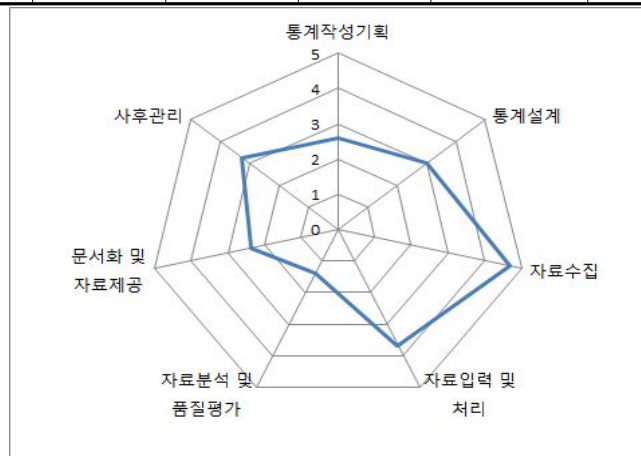
금번 품질진단 매뉴얼부터는 주관적 측정지표와 5점 척도를 이용하여 모든 항목을 동일하게 측정하던 종전방식과 달리 품질지표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각 품질지표에 하위 품질지표 요소를 추가구성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해당 품질지표를 5점 척도로 평가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품질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 가중치를 부과하여 통계품질지표의 측정점수에 적용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모든 품질지표의 가중치의 총합은 100이 되도록 설계 되어 있다. 하나의 품질지표가 5점 척도 기준 5점을 받았을 경우 가중치 적용점수는 가중치(w_1)이다. 이 경우, 진단 점수가 5점이 아닌 P_1 점을 받았을 경우 가중치 적용점수는 $w_1 \times \frac{P_1}{5}$ 이 된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우 35개 품질지표에 대해 5점 척도 점수에 가중치를 적용한 환산점수는 $\sum_{i=1}^{35} (w_i \times \frac{P_i}{5})$ 가 된다.

품질지표에 따른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는 상당히 우수하고 사후관리, 통계설계는 양호한 수준이나 통계작성기획, 문서화 및 자료제공, 자료분석은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수집이 4.67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고 자료분석이 1.4로 제일 낮게 나타났다.

<표2-6> 작성절차별 평점

절차	통계작성 기획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자료분석 및 자료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	사후관리	평균
점수	2.60	3.00	4.67	3.67	1.40	2.36	3.25	2.7
가중치 적용	7.90 (15.1)	11.30 (17.9)	15.58 (16.6)	8.30 (11.4)	4.30 (15.1)	7.10 (14.9)	5.75 (9.0)	60.23 (100.0)



<그림2-2> 작성절차별 포트폴리오 분석

(1) 통계작성 기획 진단

<표2-7> 통계작성 기획 절차 진단 결과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통계작성 목적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관련성	5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관련성	1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관련성	1
국내·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정의, 기준 및 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는가?	비교성	4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정확성	2
평균	-	2.6

통계작성 기획과 관련된 품질지표는 <표2-7>와 같다. 관련성 2개 지표에서 ‘매우 아니다’와 정확성에서 ‘아니다’ 1개 지표를 받아 두 품질차원이 낮은 점수를 기록하여 세 번째로 낮은 점수인 2.6점으로 평가 되었다. 세부

진단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통계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하여 한국은행에서 보도자료 혹은 수집된 자료를 매달 보고받아서 비교를 하며, 지식경제부 투자정책과에서 UNCTAD 통계를 매년 확인하고 있어 ‘매우 그렇다’로 진단했다.

<표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조문내용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작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통계 등을 수집·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9%B8%EA%B5%AD%EC%9D%B8%EC%A7%81%EC%A0%91%ED%88%AC%EC%9E%90%EC%B4%89%EC%A7%84%EB%B2%95&x=0&y=0#1iBgcolor0>

둘째,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 파악여부는 ‘매우 아니다’로 진단되었다. 품질기반현황 진단시 담당자들과 면담결과 확고한 통계개선 의지를 보였으나 본 통계가 보고통계이므로 이용자를 위한 개선을 해야 한다는데까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결국 수요자의 파악이 되어 있지 않으며, 위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3항에 의해 마이크로데이터의 제공을 하지 않기에 명부 또한 소유하지 않았다. 자료의 수집·공표 이외에 이용자를 위한 통계개선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등은 하지 않았다.

셋째, 분류의 기준과 정의에 있어, 국내기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통계자료를 생산하며,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세세분류까지 자

료가 수집된다. 국제기준의 경우 자료수집 기준이 도착금액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자체가 다르지만 일부 정의 및 자료수집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보도자료내 중요한 용어의 정의-M&A, Greenfield-는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제공의 필요성이 있다.

넷째, 통계의 개편을 위해서는 법령개정이 요구된다. 개편작업이나 이를 위한 준비상황이 공표되고 있지 않아 진단점수는 ‘매우 아니다’를 평가했다.

2) 보고통계 설계 진단

<표2-9> 보고통계 설계 진단 결과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통계 작성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가?	정확성	5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은 기입자가 이해하기 쉽고, 작성하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정확성	3
양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경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는가?	정확성	1
자료수집 및 보고양식이 통계작성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정확성	3
평균	-	3

통계 설계는 진단 결과 3점이 나왔다. 4개 항목 중 2개는 보통, 1개는 매우 우수, 1개는 미흡으로 인한 결과이다.

외국인투자가 및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다. 수탁기관이 입력하는 자료는 입력과 동시에 외국인직접투자 입력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되며 해당 분기의 1일부터 말일까지 대상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있어 점수를 부여했다.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해 KOTRA는 신고접수처에 신고서 샘플을 비치하였다. 신고서 샘플에는 용어설명, 예시 및 작성지침이 기록되어 있어 기입자의 이해를 돕는다. 자료보고 양식에 포함된 항목의 배열은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회의 또는 효과성 검토를 반영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진의 판단결과 신고서 초기 목적에 적합한 항목이 수록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항목의 중복여부, 결과표에 따른 항목의 선정 여부에 점수를 주었다.

신고서 양식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령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나 변경을 위한 사전검토 실적은 파악되지 않았다. 투자자의 비밀보호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고양식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에는 SPC 여부에 관한 항목의 경우 통계목적이기 때문에 투자가 꺼리면 기입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있어 통계자료 수집 목적에 반하고 있다.

3) 자료 수집 진단

<표2-10> 자료 수집 진단 결과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자료수집 및 보고 양식에 대한 작성요령 등이 제공하고 있는가?	정확성	5
보고단계별 담당자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4
자료수집 시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5
평균	-	4.67

자료수집 절차는 ‘매우 그렇다’ 2개 항목, ‘그렇다’ 1개 항목으로 전체 세부 작성절차별 점검표에서 가장 높은 평균 4.67으로 측정되었다.

신고서의 작성요령은 수탁기관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 및 수탁기관에 비치된 샘플에 각 항목마다 충분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으며 신고자가 제출해야 할 제출서류부터 서식항목까지도 모두 포함한다.

실무자매뉴얼 또한 자료수집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항목의 개념 및 해설이 충분히 수록되어 있다. 매뉴얼에는 각 신고자가 신고서를 통일된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실무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수록되어 있다. KOTRA는 매년 1~2회 매뉴얼을 교관용 표준교안으로 사용하여 수탁기관 교육을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현장관리 실시여부는 법령에 의한 보고의무 부과로 누락, 불응을 방지한다. 또한 수탁기관 실무자는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서가 접수되는 즉시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입력하므로 보고기준시점 준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4) 자료 입력 및 처리 진단

<표2-11> 자료 입력 및 처리 진단 결과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확성	4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3
보고자료 내용에 대한 검증 단계를 거치고 있는가?	정확성	4
평균	-	3.67

자료입력 및 처리진단은 평균 3.67로 진단되었다. 에디팅 작업에 관한 측정 점수 3점을 제외하고는 우수하게 측정되었다.

외국인투자통계는 해당시스템 및 매뉴얼 등 표준화된 체계가 잘 마련되어 있었다. 자료 수집 또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세세분류까지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단, 입력프로그램의 서버관리 및 서버보완은 비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오류점검에 있어 자동화된 점검 시스템 없이 실무자, 책임자, 관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아쉬웠다.

현실과 괴리가 있는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특성상 중복신고 등 데이터 과대측정방지를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별도의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지침이 없어 외국인투자가가 수탁기관에 중복 투자 여부를 알려 투자철회를 하기 이전까지는 사실상 발견이 어렵다. 중복 투자 외의 기본적인 원/달러 기입오류와 같은 이상치는 KOTRA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자동화된 오류점검 시스템은 없는 반면 수탁기관, 관리기관에서 자체오류 점검을 하고 있다. 입력오류 발견시 수탁기관에서는 당일 수정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KOTRA에 원장변경 신청을 하여 KOTRA 혹은 지식경제부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단, 집계표 형태의 보고자료 검증은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표2-12>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관련통계 등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료 결과를 검증하고 있는가?	일관성	1
시계열자료는 연속성이 있으며, 단절이 생길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는가?	비교성	3
경제·사회현상이나 통계작성방법 변경 등이 통계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는가?	비교성	1
최종 통계자료에 대한 검증은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정확성	1
공표된 잠정치, 확정치 간의 불일치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정확성	1
평균	-	1.4

자료분석 및 품질 평가는 가장 낮은 점수인 1.4점을 진단했다. 세부작성절차별 진단에서 가장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의 개념, 작성방법, 조사시준과 시기가 법령에 의해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2010년 10월 5일 법령 개정에 의해 자료수집 기준이 변경이 되어 시계열 단절이 예측되는데 이를 명시하지 않고, 시계열의 단절 여부도 표시하지 않았다. 기준 변경 시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 검토절차가 공표되지 않아 ‘보통이다’ 점수를 받았다.

위 항목을 제외한 자료 분석 및 품질평가는 모두 ‘미흡’하다. 이는 유사 통계와 자료 수집기준이 달라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이에 따라 분석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 등 검증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보도자료 발간 외에 영향분석 결과가 없는 것도 문제다.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점점 증가하고 있음에도 통계의 활용도가 낮다. 심지어 외국인투자의 금액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었을 때도 변경 이전·이후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가 공표되지 않았다.

끝으로 보도자료에 해당분기 도착금액이 잠정치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후 확정치에 대한 공표가 없다. 잠정치·확정치간 불일치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 결과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의 문서화 또는 공유여부에 있어 점수를 평가받지 못했다.

6) 문서화 및 자료제공 진단

<표2-13> 문서화 및 자료제공 진단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정확성	3
간행물 수록자료에 대한 오류를 점검하고 있는가?	정확성	1
간행물에 통계와 관련된 설명자료를 수록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돕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3
개편작업 후 개편내용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접근성/명확성	1
보고 양식에 포함된 모든 항목을 모두 공표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1
통계자료 공표시 모든 이용자가 조사결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3
결과 자료를 적절한 시점에 공표하고 있는가?	시의성/정시성	5
결과 자료의 공표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시의성/정시성	5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결과자료를 제공하고 있는가?	접근성/명확성	2
자료제공 시 개인 비밀보호를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관련성	1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가?	일관성	1
평균	-	2.36

문서화 및 자료제공의 진단도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판단되었다. 시의성·정시성에 있어서는 5점 만점을 받았지만, 그 외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명확성은 평균 2점, 관련성 1점, 통계의 일관성 1점, 정확성 2점을 진단받았다. 세부 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작성과 관련된 자료의 문서화 여부에서는 통계개발 및 작성의 기본계획 수립, 변동사항, 내용검토 매뉴얼, Q&A 정리 축적, 전화질의답변의 정리 축적에 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 하지만 자료수집을 위한 업무매뉴얼은 발간되고 있으며 매 교육시 지속·보완되고 있어 3점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간행물수록 자료에 대한 오류점검 여부는 공표전 통계생산과 관련 오류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사전점검이 없어 1점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최종 공표자료와 DB 자료 간의 약간 정도의 차이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표이전 자료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보도자료에 이용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 보도자료에 자료수집 활용범위를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명시하였지만 이용자를 위하여, 조사개요, 통계 DB의 메타데이터 접근법 및 용어해설 등 사용자를 위한 정보가 다소 누락되어 있어 3점으로 평가하였다.

넷째, 법령개정에 의해 통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개편과정, 방법, 결과 등을 수록한 보고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다. 나아가 외국인투자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을 당시에도 자료이용 상 유의사항이 이용자들에게 공지되지 않아 1점으로 평가하였다.

다섯째,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세세분류까지 조사되며 최종모기업정보를 신고서에 기입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기업정보보호를 위한 자료는 법령에 의해 제공하지 않게 되어 있어 원 자료에 대한 접근이 극히 제한적이다. 수집되는 자료에 비해 공표되는 항목이 적어 1점으로 평가하였다

여섯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와 DB 자료는 일반인이 외국인직접투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다. 보도자료와 DB 자료 모두 지정시점에 맞춰 보도가 나가고 업데이트가 실시된다. 하지만 보도자료(hwp) 파일의 경우 아예 업로드를 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2-14> 2007년 품질진단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업로드 시기

게시글 제목	공표일자
'12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2-07-04
'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2-04-05
'11년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2-01-12
'11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1-10-11
'11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1-07-15
'11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11-04-05
2010년 1~9월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10-10-06
10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 발표	2010-04-06
09년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114.8억불	2010-01-05
09. 3/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2분기 연속 증가	2009-10-01
2009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09-07-02
2009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동향	2009-04-02
2008년 3/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8-10-02
2008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8-07-03
2008년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8-04-02
2007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008-01-07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외국인”으로 검색하여 2007년 품질진단 이후 자료공표일시 점검

또한, 12년 1분기 자료의 경우 동영상보도자료 게시판에 위의 표와 같이 4월5일에 공표되었으나 기존에 이용자가 이용하던 보도자료 게시판이 아닌 다른 게시판에 아무런 공지 없이 업데이트를 하여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었다. 기존에 보도하는 보도자료 게시판의 경우 6월 5일 업데이트 실시되어 자료 업데이트를 한 곳으로 통일하여 업로드 할 필요가 있다. 2012년 7월 4일 업데이트된 12년 상반기 보도자료 또한 동영상보도자료 게시판에만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 보도자료 게시판에는 2012년 7월 12일 현재 업데이트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부족한 점을 근거로 접근성/명확성을 3점으로 평가하였다.

일곱째, 해당분기 익월 15일 이전까지 공표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시의성이 탁월하다. 단, 공표기간 적절성 검토 실적은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여덟째, 보도자료는 해당 분기 이후 15일 이내에 공표 하는 것으로 예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준수를 하고 있어 시의성에 5점으로 평가하였다.

아홉째,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보도자료(hwp)와 DB자료 이외 별도의 간행물이 발간되지 않는다. 보도자료 내부에도 이용자를 위한 접근성·명확성이 매우 부족하였다. 이용자를 위한 이용사항이 수록되어 있지 않으며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공지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서 주요 통계사이트(KOSIS, 관련기관 사이트)와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았다. e-나라지표의 경우 배너가 있으나, 지식경제부 배너 더보기 클릭하여 찾아야 하는 수고가 있어 일반이용자들이 찾기에 다소 불편함이 있다. 따라서 2점으로 평가하였다.

열째, 마이크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제공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1점으로 평가하였다.

열한째, 유사통계와 비교 및 검토를 통해 그 요인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관성 여부 역시 1점으로 평가하였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조사시기, 대상, 기준을 비교, 분석하지 않기에 차이요인 또한 분석·제공되지 않는다.

7) 사후관리 진단

<표2-15> 사후관리 진단 결과

품질지표	품질 차원	점수
새로운 정보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통계작성 체계를 관리하고 있는가?	관련성	3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전문성 유지 및 개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정확성	2
통계작성 방법의 타당성에 대한 지속적 검토 및 개선을 하고 있는가?	해당없음	5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가?	해당없음	3
평균	-	3.25

사후관리 진단은 평균이 3.25점으로 평가하였으나 품질차원과 관련이 없는 두 개 항목을 제외하고 관련성·정확성을 대표하는 평균점수는 2.5점으로 더 낮아진다. 사후관리 또한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관련성의 경우 유사통계 유사 통계 작성기관의 계획서를 수집하고 있지 않으며 적정 전문 인력 유지 또는 확보가 미흡하다. KOTRA의 경우 담당 직원의 근속 연수가 7년 4개월, 8년 4개월로 업무의 연속성이 인정되나 통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담당자가 1명에 불과하고 순환보직의 대상이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통계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없지만 각 부서에서 INSC 서버관리 등을 목적으로 적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위한 항목은 담당직원의 관련분야 3년 이상 근속여부 외에는 모두 없음으로 진단했다. KOTRA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은 높게 나타나지만 통계 분야의 전문성(학위, 자격증, 전문성 교육 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문협회,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통계 담당 직원 유보시 전문성,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풀 확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계작성 과정의 타당성 검증 절차도 정립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기준의 현실성 결여를 인지하고 도착기준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보이나 유사 통계 작성과정 자료수집, 통계 작성 과정별 작성방법 개선방안 검토 여부가 확인

되지 않았다. 단, 오보에 대한 언론보도 기사를 모니터링하여 그에 대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보도해명자료
(11. 3. 29)

수신 : 지식경제부 등록기자
제목 : 매일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최대라더니...”
보도에 대한 해명

1. 보도 요약 (11.3.29, 매일경제)

□ 정부는 지난해 FDI신고액이 10년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홍보하였지만,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집행률(신고액 대비 도착액 비중)이 40.7%에 그쳐 8년래 최악의 실적 기록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

□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은 외국인투자 동향에 대한 **선행 지표적인 성격**으로서, 투자신고는 투자의향을 밝히는 단계로서 국내의 경제여건, 인허가 등 각종 절차의 이행, 외부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투자집행 지연사태 발생**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어 '09년과 '10년 신고금액과 도착금액간 차이가 커짐

○ 특히, '10년에는 4/4분기에 신고액이 집중(58억불, 전년도 67.5%)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며, 지난해 4/4분기 집중된 신고액에 대한 투자 실현은 금년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전망

○ 금년 1/4분기(3.28일 현재),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중은 70%이상을 기록*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3.28일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액 17.4억불, 도착액 13.6억불

※ 자료문의 : 지경부 투자유치과 유별민 과장(02-2110-5361)
지경부 투자유치과 박영우 사무관(02-2110-5363)

<그림2-3> 지식경제부 보도해명 자료

마지막으로 효율적 통계 작성을 위한 품질관리 여부 항목은 3점으로 평가하였다. 품질관리기반현황에서 통계작성 담당자들은 통계품질 개선의지를 보였으나 자체품질진단 시스템이나, 통계품질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으며 작성 절차에 대해 전문가 자문 또는 진단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자료의 입력과 집계를 위해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DB2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DB 자료가 관리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보통이다’로 평가하였다.

(2) 품질차원별 분석 및 진단결과 종합

진단결과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정시성·시의성이 매우 우수한 통계로 진단되었다.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 구축된 체계는 우수한 편이며 통계 설계, 자료 입력 및 처리에 관한 심각한 문제점 및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통계작성 기획,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문서화 및 자료제공의 경우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사후관리 및 보고통계 설계에 있어서도 품질개선을 위해 보다 힘써야 한다. 이하에서는 항목별 주요 진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통계작성 기획과 관련된 품질지표에 있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가 통계

수요자조차 파악되어 있지 않다. 또한 용어의 정의를 수록하지 않고, 통계개편 작업, 이를 위한 준비상황 또한 공표되고 있지 않아 해당 항목의 관련성 및 정확성 개선이 시급하다.

보고통계 설계 항목에서는 심각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통계 작성 대상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 수집되는 자료는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 매뉴얼에 실시간으로 집계된다. 신고서의 항목 또한 논리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양식 변경시 사전검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다.

자료 수집은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서 가장 우수한 부문으로 평가되었다. 신고서의 작성과 이해를 돕기 위해 실무자를 위한 매뉴얼과 외국인투자를 위한 샘플이 비치되어 있다. 코트라에서 매년 수탁기관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고기준시점 준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입력 및 처리 부문은 입력을 위한 전용 시스템 구축, 매뉴얼 발간 등에 의해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자동화된 오류점검 시스템 및 별도 오류점검 지침은 없으나 실무자, 관리자에 의해 수치입력 오류점검 및 이상치에 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우수한 품질수준을 보였으나 에디팅 작업에 대한 지침 또는 매뉴얼이 없어 “보통이다”로 평가되었다.

자료 분석 및 품질 평가는 전체 세부작성절차 진단과정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유사통계와 비교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영향분석의 부재, 자료수집기준 변경시 이전·이후의 비교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자료공표 이외에 분석절차가 없으며 도착금액의 잠정치 발표 후 확정치의 미공표 등이 낮은 점수를 평가받은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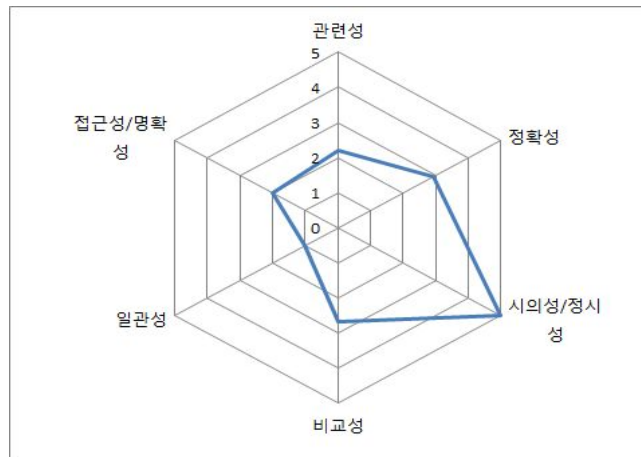
문서화 및 자료제공에 있어 정시성·시의성을 제외한 접근성·명확성, 정확성, 관련성, 일관성의 품질차원이 미흡하다. 자료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축된 시스템에 의해 수집되고 있으나 공표 자료와 DB 자료 수치의 불일치와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다. 용어해설 등 이용자를 위한 배려가 없으며, 원 자료 미 제공, 유사통계와의 비교를 시행하지 않는 것 등을 근거로 해당 품질차원의 품질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의 경우 통계의 타당성 검증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적정 전문 인력 유지 또는 확보가 미흡하다. 통계업무 담당직원이 통계생산 및 관리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통계 분야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와 같이 판단했다.

아래 <표 2-16>은 각 품질지표의 품질차원별 항목을 따로 분류하여 점수를 측정하였다. 5점 척도에서 시의성의 경우 5점 만점으로 높이 평가되었지만 그 외 5가지 품질차원의 경우 모두 3점 미만으로 진단되어 낮은 품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일관성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표2-16> 품질차원별 평점

진단 주제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관련성	접근성/명확성	비교성	일관성
5점 척도	2.94	5	2.20	2.0	2.67	1



<그림2-4> 품질차원별 포트폴리오

낮게 평가된 품질 차원별로 낮게 평가된 이유와 개선방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낮게 평가된 일관성의 경우 동일한 경제활동으로서의 외국인직접투자에 관한 유사통계인 한국은행 작성 외환거래 기준 통계와 일관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통계는 신고(투자계획)-도착(투자실행)의 측정 대상이 다르므로 각각의 측정기준의 통계 차이의 분석을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접근성 및 명확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통계 개념이나 기준, 작성 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하고 이용자의 자료접근도 제한적이다. 따라서 FDI통계의 개념, 기준, 절차 등에 관한 간행물이 필요하며 이용자가 메타정보나 통계DB에 용이하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 통계제공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용자 수요에의 부합 여부가 중요한 관련성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통계 이용자의 파악, 설문조사 또는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이용자의 수요나 만족도를 점검하여 반영

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국가 간, 시기 간 FDI통계의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신고-도착 통계 구분 등 정확성을 제고하는 조치도 중요하다.

세부작성절차 품질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통계 수요자 파악

통계담당자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의 기초자료를 통계 목적으로 법령에 명시하고 있어 이용자의 파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투자금이 우리나라 경제의 산업, 고용 등 다양한 경제지표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전문이용자 및 일반이용자에 대한 수요가 많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통계의 수요자를 파악하고 전문·일반 수요자와 함께 전문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통계 품질개선에 대한 정보를 수집·반영할 필요가 있다.

2) 이용자를 위한 항목 수록

공표자료는 분기마다 작성되는 보도자료가 전부다. 따라서 통계자료의 주요 용어정의, 자료수집 기준 및 절차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보도자료의 특성상 이러한 항목들의 수록이 불가능하다면 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 등의 발간을 통해 이용자의 통계 이해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3) 통계담당직원의 전문성 확보 및 증원

수탁기관 36개를 담당 및 관리하는 직원은 총 3명이다. 이 중 KOTRA직원 2명의 경우 상담·수탁 업무도 함께 하고 있어 통계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KOTRA의 업무 연속성을 위해 통계업무 담당자의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지 않은 점은 긍정적이다. 두 기관 중 통계전문 교육을 받은 담당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탁업무와 통계업무의 분리를 위해 통계관련 전문가를 확보가 필요하다. 전문가는 매뉴얼을 통해 수시 품질 점검 및 발간물 공표 이전 오류검토 등을 통해 법령개정 없이 정확성, 관련성·접근성과 같은 품질차원 내에서의 품질개선을 꾀할 수 있다.

4) 문서화 및 원 자료 공개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문서화된 자료가 거의 없다. 연구진이 세부작성절차 진단을 위해 받은 자료의 경우 실무·업무 매뉴얼 및 보도자료가 전

부다. 따라서 통계 개편회의, 자문회의 등 개최시 이를 문서화 하여 보존·공개하여 개편의 정당성 확보와 이용자의 요구사항 반영정도를 공표하여 관련성·접근성 품질차원의 개선이 요구된다.

법령에 의해 모든 원 자료의 공개는 불가능하지만 자료공표가 올바르게 되었는지, 정책·학술적 목적의 연구를 위해 법적 허용범위 내의 자료의 공개가 필요하다. 원 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법령에 근거하여 제공할 수 없는 자료와 제공 가능한 자료를 명시하여 원 자료 접근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무조건 자료 접근을 금할 것이 아니라 납득시킬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5) 영향분석·비교분석 실시

우리나라는 대외경제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규모개방경제다. 따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원 자료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외부에서는 영향분석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수집된 자료를 통해 자료수집 기관의 내부에서 분석을 실시, 공표하는 방안이 있다. 또한, 유사통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차이점을 명시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계기준의 변경 등에 의해 자료수집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후 자료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여 차이점을 명시하고 시계열단절을 표시해야한다.

4.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는 수집된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에 따라 전체 품질이 좌우된다. 이는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오류발생시 잘못된 정보가 생산되어 공표될 경우, 수요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통계신뢰도가 하락한다. 자료의 수집이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정에서의 오류가능성 및 보고절차별 발생 가능한 오류를 파악하는데 중점 목표를 둔다. 또한 자료수집 담당자로 부터 자료 보고시의 문제점 및 애로·개선·건의사항 여부를 확인하여 잠재적 오류 파악 후 정확성 개선에 일조하는 방향을 모색한다.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보고통계이며 신고기준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의 신고서에 의해 자료가 수집된다. 이하에서는 정확성을 점검하

기 위한 중점 확인사항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신고서 입력을 담당하는 실무자, 신고자료 오류를 검토하는 책임자와의 면담을 통해 발생가능 오류 점검,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고 이후(또는 투자금액 집행 이후) 사후관리여부, 셋째 KOTRA에서 시행하는 수탁기관 교육 참석 여부, 마지막으로 업무 및 보고과정에 있어 담당자가 지니는 애로사항을 확인한다.

앞의 두 가지 절차를 통해 현장에서 자료가 수집되는 동안 발생 가능한 오류를 파악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 여부를 통해 수치의 정확성을 파악 한다. 또한 교육 참석을 통한 수탁기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업무에 대한 관심, 업무 및 보고과정에 있어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앞의 두 절차에서 지나칠 수 있는 사항의 재점검 및 검토를 실시하였다.

수집자료의 정확성 절차는 수탁기관 담당 실무자·책임자를 연구진이 직접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37개소의 수탁기관 중 8개소를 선정하여 방문을 실시했으며 이중 5개소가 서울에 위치하였고, 3개소는 지방(대구, 마산, 부산)에 위치했다. 서울에 위치한 수탁기관은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위주로 선정을 하였고, 지방에 위치한 수탁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신고업무의 발생빈도가 적거나, 잘 발생하지 않는 기관을 선정하여 그 차별화를 두었다. 면담을 수행한 수탁업무 담당자는 총 10명으로 이중 실무자 8명, 책임자 2명으로 구성되었다.

(1) 무응답 및 응답오류 문제에 대한 접근

1) 중점 진단 사항

□ 자료수집 방법의 적절성

외국인투자통계는 외국인투자 신고서가 수탁은행 혹은 KOTRA에 제출되면, 해당 수탁기관은 신고서를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동 자료를 입력하고, 입력된 자료는 KOTRA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취합되어 집계분석되며, 지식경제부에 의해 외국인 투자 금액 통계가 분기별로 작성되는 과정을 따른다.

본 통계는 보고통계로,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서 작성된 외국인투자신고서로부터 자료가 수집된다. 수탁기관 실무자는 이를 접수하며, 수탁기관 책임자가 해당 신고서를 확인 후 입력하고, 다시 KOTRA 담당자에 의해 수집자료에 대한 오류점검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통계가 생산됨으로

실질 자료 보고기관의 자료입력 방법과 KOTRA의 오류점검 과정의 적절성을 중점 점검할 필요가 있다.

□ 표본관리, 무응답 대체 및 응답오류

본 통계는 보고통계로 표본관리나 대체표본 문제 및 무응답 대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고 누락의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료 수집의 오류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외국인직접투자 신고는 외국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고하는 경우보다 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 직접투자 규모가 과대측정 될 여지가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자료수집에 대한 오류 발생 가능성은 적으나 (1) 한국표준산업세분류 입력 (2)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되는 특수목적 (special purpose)회사 유무인 SPC 여부 등의 항목에서 응답오류 및 무응답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하다.

2) 자료수집 방법 관리

□ 조사 내용 및 오류점검

<표 2-17>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조사 신고(허가) 신청서 내용

대상	항목	비고
주식 등 발행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SPC 여부
	③ 주소	
	④ 공장(사업장)소재지	
	⑤ 하고 있는 사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신청)접수기관 기재]
	⑥ 자본금	
신고(신청) 내용	⑦ 주식취득자 일반사항 (외국인투자가)	명칭, 상호, 주소 및 SPC 여부 SPC의 최종 지배모기업 조사
	⑧ 국적	
	⑨ 주식 양도자	
	⑩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⑪ 취득 주식 내용	수량, 주당 액면가, 액면 총액, 취득 총액
⑫ 금번 취득 후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원화기준 액면가액 및 취득가액	

<표 2-17>은 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신고(허가)신청서의 조사표 내용의 일부이다. 자료 수집 오류 발생 가능성은 (1) 신고자가 서류를 잘못 기입 한 경우 (2) 수탁기관에서 시스템 상 입력 오류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직접 투자신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탁은행은 양식 작성을 도와주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수탁은행 담당자는 통계작성자가 보다, 은행업무의 일환으로 본 일을 담당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투자가가 양식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많아, 수탁은행 담당자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오류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조사항목 중 ⑥하고 있는 사업항목은 투자가가 주로 서술형으로 작성하고 접수기관이 직접 검색하여 입력을 하는 구조로 이루어지기에 이 부분에서 수탁은행 담당자에 의한 응답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 조사방법의 특징 및 자료입력 시 이상치 확인 유무

KOTRA 담당자에 의해 수탁기관에서 작성된 자료의 이상치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이상치는 투자 총액(혹은 액면가액)이 과도한 경우에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전화로 오류점검을 하고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

으로 보면 응답에 대한 정확성 측면과 조사방법 상 무리가 없는 편이다.

□ 대체표본 선정 및 항목무응답 적절성

본 통계는 보고통계이므로 대체표본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코드 입력에 응답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항목무응답의 경우 SPC 여부에서 발생되는데 SPC 여부에 대한 응답률이 20~30%에 불과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 경우 항목무응답에 대한 처리방안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 신고금액과 도착금액 통계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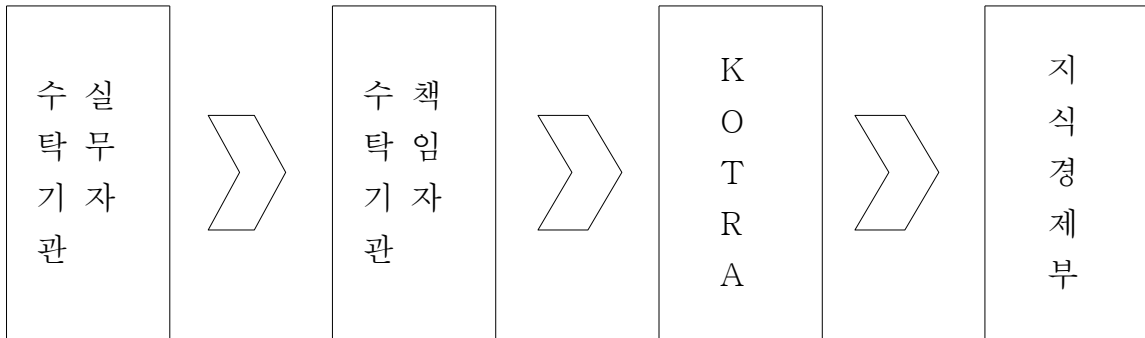
본 통계는 신고통계 조사이다. 그런데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 대해서는 신고의무와 같은 보고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두 통계간의 수치의 정확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다. 도착금액 통계 역시 동 수탁기관에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2)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자료수집 및 오류점검 과정

외국인 투자에 관한 신고는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신주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기존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신고,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 주식 양도·감소 신고로 분류가 되어 접수가 된다.

외국인투자가에 의해 작성된 신고서가 수탁은행 혹은 KOTRA에 제출되면, 수탁은행 혹은 KOTRA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에 자료를 입력하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는 KOTRA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 취합된다. 실무자의 자료 입력 후 수탁기관 책임자에게 결재를 받는 동안 오류 검토가 1회 이루어지고, 이후 KOTRA 담당자에 의한 이상치(과대/과소)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KOTRA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신고서와 대조하여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원화 금액을 달러에 실수로 입력을 하여 과도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를 확인하여 전화로 오류여부를 점검하고 조치한다.

<표2-18> 수집되는 자료의 오류점검절차



수집되는 자료는 적게는 수탁기관 책임자에 의해 1회, 많게는 수탁기관 실무자 및 책임자 그리고 KOTRA 담당자에 의해 3회까지 수집자료에 대한 오류 점검이 이루어진다. 오류점검의 횟수가 2회 가량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업무가 은행의 수입원이 아닌 부과적인 업무로 업무량이 많아서, 오류점검 지침 또는 에디팅 절차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 횟수에 있어 조금씩 차이가 발생했다. 수집된 자료에서 오류 발견시 입력 당일에는 자료를 입력한 수탁기관에서 직접 수정이 가능하고, 익일부터는 KOTRA에 원장변경 신청을 통해 KOTRA 또는 지식경제부에서 오류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매 분기 1일에서 해당 분기 말일까지 수집된 자료는 지식경제부에서 분석·공표를 실시한다. 그 해의 자료는 1/4분기부터 누적하여 발표를 실시하지만, 잠정치의 확정 및 DB에 추가 혹은 보완된 자료의 알림 및 추가 공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탁기관 담당자는 1년에 1~2회 KOTRA에서 수탁기관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전반·후반으로 이루어지며 외국인직접투자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3) 검토사항

1) 자료의 정확성

자료수집간 오류 발생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신고자가 서류를 잘못 기입해온 경우이며, 둘째는 신고담당업무 실무자가 프로그램에 입력 도중 입력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다. 수탁은행은 외국인투자가가 투

자신고를 하러 수탁기관에 방문할 때 미리 서류를 작성해오면 서류의 처리 및 입력을 대행해주는 곳과, 항목을 설명하며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곳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실무자가 신고서 서류의 작성을 돕는 후자의 경우 신고서 작성 중 생기는 오류 발생이 적었다. 한편 전자의 경우 투자자가 양식을 잘못 기입을 해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는 다양한 업종과 정부지원제도에 따라 신고양식 기입 및 입력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신고서에 서술형으로 적어오는 투자자의 경우 수탁기관 업무담당자가 직접 검색을 하여 입력을 해야 하는데 업종 선택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 또한 원장 내용변경에 있어 기존주, 양도, 신주 취득 등 양식이 복잡하여 고객들이 잘못 기입을 해서 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 통계의 신고서 작성을 위하여 일부 수탁기관에서는 샘플을 비치하여 두었으나 다양한 업종과 정부의 혜택을 모두 투자자에게 전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개인투자자의 경우 기업가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항목작성에 어려움을 갖는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신고는 외국인이 직접 내방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보다 대리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투자자의 경우 대리인에 관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외국인투자자의 대리인인지 외국인을 가장하여 내국인이 직접투자를 하러 온 것인지 사실상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통계 수치가 과대측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매뉴얼에 SPC여부는 통계목적상 조사하는 항목이니 투자자가 투자실체 공개의 여부를 꺼리는 경우 기입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모기업의 정보까지 조사 자료가 수집되는 경우는 20~30%에 불과하다.

자료 입력 간 오류 발생 가능성의 경우는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일 숫자를 상대하고 입력을 하는 은행 담당자의 경우 입력과 확인이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발생하는 입력 오류의 경우 책임자의 신고서를 대조한 내부결재 과정 또는 코트라에서 시행하는 이상치 모니터링은 실시하기 때문에 자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율은 적다고 응답했다.

2)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

KOTRA는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이어서 수탁기관인 KOTRA에 대한 통계작성과정 모니터링, 품질확보를 위한 필요절차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는 외국환은행의 경우 지식경제부나 KOTRA와 조직 간의 직접적 관련성이 작아 수탁기관 실무담당자 교육 이외에는 관리의 접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수탁기관 실무담당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그 과정에서 통계작성과정 모니터링, 품질확보를 위한 필요절차 준수 여부를 점검해야 할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조사체계가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식경제부에 집계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조사 완료 후 제출 받을 자료는 많지 않다. 물론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등 제반 서면 기입사항을 일정 표본에 대하여 사후에 전산자료와 대조하는 점검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통계의 정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외국인직접투자 사후관리

외국인직접투자 도착금액에는 신고의무와 같이 강력한 보고의무가 없다. 따라서 통계 수치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수치의 정확성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과 통계사이에 발생하는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직접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사후관리를 수탁기관에서 담당하는 방안이 있다.

실무자 및 책임자와 함께 면담을 실시한 결과 외국인투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투자자를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야 하고 신고와 도착이 동일한 은행에서 이루어져야 자금의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무자들은 신고이후 도착에는 아무런 강제 보고의무가 보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년이 뒤 투자 철수 시에 도착보고를 하는 외국인투자가 및 기업의 수가 많다고 하였다.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수탁기관 실무자의 경우 모두 외국환업무를 함께 병행하고 있어 외국인직접투자에만 전념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외국계 은행-특히 일본계 은행-의 경우 기업들에게 신고업무는 국내 은행에서 실시하고 실익이 되는 도착만 유치하려는 행태를 보인다. 외국계 은행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이유는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업무 자체가 무수익 업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일부 외국계 은행의 경우 내부 규정상 도착금액이 해당은행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수탁기관의 변경을 거부하는 외국계 은행이 있다고 한다.

끝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외국인직접투자 발생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과 관련된 주무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자료를 송부하도록 명시

되어 있으나 점검한 8개 수탁기관중 이를 이행하고 있는 기관은 2개소에 불과했다.

4) 수탁기관 교육 수강여부

지난 번 품질기반 진단 개선과제로 수탁기관에 대한 교육이 매년 1~2회 이루어진다. 수탁기관 교육은 외국인직접투자 업무 매뉴얼과 외국인투자통계 시스템 매뉴얼로 이루어진다. 교육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프로그램 공지사항을 통해 수탁기관에게 전달된다. 수탁기관의 교육여부는 현재의 외국인 투자동향을 파악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며, 프로그램 사용을 보다 친숙하게 만들어 주는 기회다. 실무자들은 다른 통계 교육을 수강하지 않기에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업무를 돌이켜보고 발생가능한 오류의 최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진이 방문한 8개의 수탁기관 중 지방 3개 기관 중 2개 기관이 연 2회 교육을 모두 참석하였으며, 서울에 소재한 수탁기관 5개중 3개 기관이 해당 업무 실무자가 모두 교육에 참석을 한다고 답변을 하여 수탁기관 교육 참석률이 높게 나타났다. 참석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던 지방은행의 경우 불참이유로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교육을 실시하여서, 지방에 위치하여 신고 업무가 자주 발생하지 않기에 문의점이 생기면 KOTRA에 전화 질의를 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표2-19> 수탁기관 실무담당자의 교육 참석 여부

(단위: 명)

소재지	교육수강자	실무자
지방 수탁기관1	0	1
지방 수탁기관2	1	1
지방 수탁기관3	1	1
서울 수탁기관1	3	3
서울 수탁기관2	1	1
서울 수탁기관3	2	2
서울 수탁기관4	2	3
서울 수탁기관5	1	3
총 인원	11	15

하지만 해당 수탁기관 담당자의 해당 보직 근속 연수는 통상 1년으로 전

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서울에 위치한 수탁기관의 경우 3개 기관의 실무자는 모두 참석을 한 적이 있으며, 1개 기관은 작년에 2명이 교육을 받았기에 올해는 교육 미필자 1명만 교육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답하였고 다른 한 개 기관의 경우 다른 업무로 인해 참석을 못하였다고 답했다.

지방 불참자의 경우 거리가 멀어서, 신고업무 발생빈도가 낮음을 불참 이유로 제시한 반면, 서울에 위치한 불참자의 경우 교육내용이 매년 거의 동일해서, 기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사유로 들었다. 지방은 신고건수가 적고 서울은 신고건수가 많음을 미뤄 볼 때 교육의 불참은 신고건수의 많고 적음 보다 거리 또는 기타 업무로 인해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경우 발생한다. 교육이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연구진이 방문을 시행한 수탁기관 중 지방 1개의 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석을 하여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5) 애로사항

각 수탁기관이 지닌 애로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접수 및 등록이 무수익 업무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점에 있다. 신고를 많이 접수 받은 수탁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체 신고건수 대비 경쟁사, 자사의 현재 담당비율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여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외국인투자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신고-도착을 같은 은행에서 시행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고 답하였다.

업무매뉴얼과 프로그램 매뉴얼은 구비가 되어 있으나 업종이 다양하여 작성 및 입력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며, 정부의 혜택에 대해 문의하는 외국인투자가 및 기업을 위해 사례집의 발간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INSC상에서 투자신고 입력을 하기 위해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느리며 간혹 접속장애가 발생을 해 업무에 불편을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법령상 투자업종의 해당 주무기관에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보내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매뉴얼에 업종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의 연락처 정보가 없이 업종코드만 나와 있어 이에 관한 정보를 매뉴얼에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지식정보사회의 통계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성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 측면까지 고려하여야 한다. 수요를 고려해 작성된 통계는 인쇄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은 공표된 자료를 바탕으로 오류점검 및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확인하는 절차다. 자료의 공표는 통계 DB와 보도자료 두 가지가 있다.

<표2-20> 외국인직접투자통계 공표유형

유형	내용
보도자료(HWP)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통계 DB	통계 DB: KOSIS, e-나라지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수록

진단방법은 발간된 보도자료와 통계자료의 비교, 매뉴얼 진단절차에 따라 공표자료 분석 및 미비사항 점검을 시행했다. DB자료간 정확성 점검 결과 e-나라지표, KOSIS, 지식경제부 DB는 동일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단, DB 자료 수치점검은 e-나라지표의 경우 최근에 업로드된 2011년 3/4분기까지만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e-나라지표와 KOSIS의 경우 산업별분류자료만 공표하고 있어 지식경제부 DB자료에서 공표되는 기타 정보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보도자료와 DB자료간 점검은 지식경제부 DB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식경제부 DB자료는 산업별 분류자료 이외에 공표되고 있는 국가별, 산업별, 기간별, 규모별, 형태별, 도착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2010년 10월 5일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의 금액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자료수집 기준이 변경되었다. 이에 시계열 단절을 예측하였으나 보도자료, 메타자료,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내용이 공지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수집기준 변경에 따른 시계열상의 변화가능성은 제하고 진단을 실시하였다.

(1) 공표자료 점검표

1962년 해외차관 도입 시부터 한국경제의 발전과 함께 수집되기 시작한 자료는 2005년부터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식통계로 작성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근 50년간 수집된 방대한 정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 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의 경영정보에 해당하는 자료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온라인 DB상에서 제공되는 자료 내에서 보도자료와 비교를 시행하였다.

중점진단 사항은 수치자료,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용어해설 부분, 기타오류 항목으로 요약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21> 공표자료 오류 점검결과

(단위 : 건)

분야	적절	부적절	해당없음/비고
• 수치자료점검	3	3	2
• 통계표 형식 및 내용점검	6	3	6
• 용어해설 부문 점검	1	1	1
• 기타 오류	3	-	2
합 계	13	7	11

1) 수치자료점검

<표2-22> 수치자료점검표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교하여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사실 및 원인 명시 여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제시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 -	<input type="checkbox"/> - -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고건수와 금액의 경우 종종 수치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최근 자료일수록 오류가 잦았다. 2011년~2012년 사이 발생한 오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 투자도착 이후 30일 이내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의무가 부과 되어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신고시점 해당분기가 지난 이후 도착신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도자료 발표 이후 내용변경 또는 중복투자신고의 철회에 따른 DB자료 수치변동에 의해 야기된 문제로 추정된다. 반면 2007년~2010년에 발생한 오류는 수치입력 오류 또는 업데이트 미비로 추정된다.

확인된 오류수치는 대부분 1천불/백만불의 공표자릿수에 따른 반올림 차이의 결과이다. 즉 천불기준인 DB자료를 백만불 기준으로 반올림하면서 발생한 차이로 판단되며 가로합/세로합의 불일치도 대다수 이러한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 또한 다른 원인은 단위 표기법에 있어 올림, 내림, 반올림을 혼재하여 사용한 것이 수치오류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자료는 1962년부터 조회가 가능하였기에 시계열 단절 여부는 적절로 표기하였다. 한편 메타자료는 2008년 이후 업데이트가 시행되지 않아 자료기준 변경이 확인이 불가능하여 부적절로 표기했다. 이 외에 비상식적인 수치, 시계열상의 이상치는 발견되지 않았다.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

<표2-23>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점검표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2-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	-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	-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통계표상 형식의 경우 금액 기준 및 금액표기 위치가 문제되었다. 일부 그림에 있어 금액기준이 가로 또는 세로로 쓰여 있어 통일되어 않은 모습을 보였다. DB 자료는 천불, 보도자료는 백만불로 금액기준을 주로 표기하는데, 보도자료 내 일본기업 사례에서 천불을 금액기준으로 표기하여 일관성을 해친다.

< 주요 일본기업의 투자 사례 >

투자자명	對韓투자 사유	신고금액 (천불)
------	---------	--------------

<그림2-5> 보도자료 금액기준 표기 혼재 예시

보도자료에 사용된 기호 및 단위표기 적절성의 경우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통계기호는 사용하지 않고 퍼센트 증감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단위를 사용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래프·표의 경우 대부분 수치에 알맞

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단, 원기둥 그래프의 수치와 DB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 발견되었으며, DB 자료에서 미 제공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표자료에는 주석표시가 사용되지 않았으며, 수집되는 자료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신고서에 의해 집계된 자료에 의해 분석·공표되므로 2-6과 2-7은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3) 용어해설 부분 점검

<표2-24> 용어해설 부분 점검표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	-
3-3. 용어의 통일성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도자료에서 인용통계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3-2는 해당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전체적으로 동일한 내용에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통일성은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M&A, Greenfield와 같은 전문용어 사용 시 그에 대한 해설과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통계 이용자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있다.

4) 기타오류 점검

<표2-25> 기타오류 점검표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	-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본 통계의 기타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목차, 색인 등은 보도자료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없으며 한글 및 영문표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다. 통계표 제목 또한 통계표와 수록내용이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국가별, 산업별, 기간별, 형태별로 비교하고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2)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은 매뉴얼에 따라 1. 이용자를 위하여, 2. 조사정보, 3. 모집단 및 표본설계, 4. 자료집계 및 추정으로 나누어 점검한다. 점검자료로는 2011년 1월 13일에 보도된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를 이용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명시된 외국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투자가와 기업가의 투자 신고서에 의해 작성된다. 국내 모든 외국인 투자가 및 기업가가 모집단에 해당되어 표본조사를 하지 않으므로 3. 모집단 및 표본설계를 제외하였다. 4. 자료집계 및 추정 진단표 역시 외국인직접투자가 또는 기업가의 신고서에 의한 보고에 자료가 집계되고 있는 보고통계로 무응답이 발생하지 않아 진단에서 제외하였다.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결과를 요약한 표는 다음과 같다.

<표2-26>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결과

(단위 : 건)

분야	유	무	해당없음/비고
• 이용자를 위하여	2	4	1
• 조사정보	-	12	-
• 모집단 및 표본설계	-	-	해당없음
• 자료집계 및 추정	-	-	해당없음
합 계	2	16	1

1) 이용자를 위하여

이용자를 위하여 진단항목으로 점검한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이용자 편의성은 낮은 편이다. 별도의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가 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한,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등 수요자를 위한 많은 통계정보가 결여되어 있다.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를 확인하던 중 1-5 자료출처 항목은 해당통계가 보고절차에 의해 집계된 자료를 분석·공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표2-27>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표: 이용자를 위하여

진단항목	수록여부	의견
1-1. 소개	X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등과 같이 이용자를 위한 소개정보를 결여하고 있음
1-2. 부록(참고자료)	X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하고 있어 통계작성 기준, 산업 또는 직업 분류기준, 용어해설 등 참고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1-3. 기호	0	기호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증감, 백분율과 같이 간단한 기호만 사용하고 있고, 자료 아래에 통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 기호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1-4. 잠정치, 확정치	X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여 공표하지 않고 도착 금액의 잠정치 추계방식의 설명이나 확정치의 공표예정 일자 등 설명이 없음 - 신고기준 통계 작성 및 공표에 그치고 있어 기간 경과 후 확정된 외국인투자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실정임
1-5. 자료 출처	-	-
1-6. 제공 매체	X	유일한 공표매체인 보도자료에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통계 DB 및 관련 웹사이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는 수록되지 않음
1-7. 문의처	0	통계작성담당 부서(투자유치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음

이용자를 위해 보도자료에 수록된 정보는 담당자의 연락처 외엔 없었다. 통계 기호의 경우 백분율, 증감율과 같이 별도설명 없이도 이용자가 이해 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지만,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소개, 도착금액(잠정)치의 기준시점 명시, 통계작성 기준, 산업 및 업무 분류 기준, 전문용어의 해설 등은 수록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조사정보

조사정보의 경우 12가지 항목 중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모두 제공 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통계의 작성목적, 작성 항목,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체계 항목만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부분제공하고 있었고 이외의 내용은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표2-28> 이용자 편의사항 진단표: 조사정보

진단항목	수록여부	의견
2-1. 통계작성 목적	X	통계작성 목적은 제시하였으나, 해외투자통계 및 국제기구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등과의 차이 점은 설명하지 않고 있음
2-2. 통계 연혁	X	보도자료에 통계연혁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2-3. 통계작성 범위 (대상)	X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음
2-4. 적용 기준	X	자료수집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2-5. 작성 항목	X	투자실적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음
2-6. 작성 주기	X	대상기간이나 작성주기는 알 수 있으나 기준 시점이나 실제 자료수집 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2-7. 자료수집 방법	X	조사·수집으로 만들어진 자료임은 밝혔으나, 조사 방법(절차)은 명시하지 않음.
2-8. 자료수집 체계	X	통계청 홈페이지 메타자료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만 설명되어 있음
2-9. 자료수집 양식 견본	X	자료수집 양식을 수록하고 있지 않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도자료는 물론 통계청 홈페이지 메타자료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도 수록되지 않아 일반이용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	X	자료수집 양식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지 않음
2-11. 용어 설명	X	Green Field, M&A와 등 항목의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음
2-12. 공표 방법	X	향후 공표일정 등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다른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가 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한 측면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보고통계로 통계의 작성과 목적이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일반인의 접근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동 자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조사·수집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그림2-6> 자료 수집 방법 및 목적

보도자료에서 <그림2-6>와 같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의거하여 조사·수집된 자료이며 외국인투자촉진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되는 자료임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방법, 절차는 수록되어 않아 메타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발간물에 메타자료, 외국인직접투자통계 DB에 바로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주소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보도자료에 있는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용자가 직접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본 통계를 통해 발간되는 자료는 매 분기 공표되는 30쪽 남짓의 보도자료가 유일하다. 보도자료의 성격상 이용자를 위한 정보를 수록하기 어렵다면 온라인 매체를 통한 제공 혹은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3) 국제기구 자료 제공현황 점검 결과

지식경제부가 작성하여 공표하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은행의 외환거래 자료와 대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별도로 작성된 통계를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다.

제 2 절 개선과제별 개선방안

1. 투자 신고-도착 피리에 대한 대응

1) 현황

외국인투자 도입 신고 수리 이후 실제 외국인투자가 도착하는 시점이나 일부·전부의 철수 시점에 신고의무가 없다. 다만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제도 활용의 전제로서 최초 도착 시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30일 이내로 느슨하게 규정하고 있다.

2) 문제점

현행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투자 통계가 실제 현상을 과대측정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외국인투자의 신고만 수리되고 도착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실제로 투자신고 분 중에는 실행가능성이 낮은 투자신고도 있어서 외국인투자 도입실적을 부풀리게 하는 이유가 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외국인투자가 일시 철수되었다가 재유입되는 경우 중복계상이 되어 순유입이 아닌 데도 외국인투자가 배증한 것으로 측정된다거나 철수금액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과대측정이 되는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 않은 점도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같은 투자 프로젝트에 관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와 최초 도착, 그리고 반복 거래 등이 서로 다른 은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아울러 일단 외국인투자가 도착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된 후에 그 기업이 입지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주무부처에 의하여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일단 유입된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를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나면 전혀 파악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규투자인지 재투자인지의 구별도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통계가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영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는데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3) 개선방안

가. 투자 도착 신고의무 강화

일반적으로 정책 목적의 외국인투자는 지속성이 있는 투자를 중시한다. 따라서 통계의 시의성(timeliness)보다는 정확성(accuracy)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에도 도착과 동시에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신고 의무 및 미 준수 시 제재 등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절차규정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와 도착 간의 시점이 나 투자금액의 차이가 적은 기업에게, 다시 말해 신고 내용을 준수하는 기업에게 차등적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만하다.⁹⁾

나. 한국은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와의 연계

지경부가 작성하는 외국인투자 통계와 한국은행이 외환관리 차원에서 작성하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근본적으로는 지경부의 외환전산망 접근 허용을 위한 법규 개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통계를 작성하는 수출입은행이 같은 금융기관으로서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 접근이 허용된다면 정부부처인 지경부라고 하여 외환전산망 접근을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지경부의 외환전산망 접근을 원천적으로 허용하기 어렵다면 외국인투자 기업별로 공통의 고유코드(ID)를 부여하여 지경부가 수집된 자료와 외환전산망의 실제 자료 간에 실시간으로 동조화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상시적인 연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한은이 조사하는 재무현황, 경영현황 데이터 등 원자료와 연결하여 집계한 자료를 공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기반이 크게 확충됨을 의미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지속관리, 투자형태 변경으로 인한 투자 철수 및 재유입 과정에서의 중복계상 방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외국인투자의 신고, 최초 도착, 반복 거래를 주거래은행 관리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중요한 해결책이다. 기업의 필요에 따른 신청으로 주거래은행의 변경도 가능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주거래은행 업무의 인수인계를

9) 이 부분은 외국인투자 정책의 문제이며 외국인투자 통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통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통하여 연속적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과거에는 주거래은행의 전담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었지만 국민의 정부시기에 경제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것이므로 현재 시점에서 재도입하는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실현된 투자 기준으로의 통계 전환

외국인투자 통계의 현실과의 괴리를 해소하려면 장기적으로 신고된 투자 기준에서 실현된 투자 기준으로 외국인투자 통계 체계를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실에 입각한 통계가 작성되고 정책의 자료로 정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목적의 관점에서 보면 사전 신고 통계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야 일정 기간 이전에 외국인투자 추세를 전망할 수 있고, 유치대상인 투자계획을 파악하여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수행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착 기준 통계로의 전환과 함께 정책(신고 기준, 지경부)-통계(도착 기준, 한국은행) 통계 이원화(two-track) 접근이 모두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여전히 신고 기준의 경우 거품(실행의지 없는 투자신고) 요인이 있으므로 통계의 거품을 가려내어 제거할 수 있는 조사기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착기준 통계를 별도로 작성하고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목적의 통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정책목적의 기준을 더욱 차별화하여 명확하게 수립할 수도 있다. FDI유치를 위한 투자촉진 목적을 추구하는 대상을 외국인투자로 정의한다면 오히려 장기차관도 제외하고 현행 최소금액 1억 원 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통계가 가져오는 착시나 거품을 제거하여 정책왜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계량치를 지경부 성과 목표에서 제외하거나 정성적 목표 지표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¹⁰⁾

한편 실현된 투자 기준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유량통계(flow statistics)와 함께 저장통계(stock statistics)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은행과의 협조체계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철수금액을 파악하여 저장통계에서 차감하고, 철수 후 재유입 금액은 유량통계에서

10) 이 또한 외국인투자 정책의 문제이며 외국인투자 통계 개선에 관한 사항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외국인투자 통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라. 자료수집의 정확성 개선

외국인투자 신고창구를 현장 점검한 결과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발견되었다. 우선 외국인투자가의 신고양식을 간소화하고 보고양식의 상세한 내용은 수탁기관 담당자가 면담을 통하여 기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산업분류의 기입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외국인투자가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홍보하고 관련 참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투자신고와 사후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제도개선도 가능할 것이다. 외국인투자 관리 매뉴얼에 업종별 주무부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업종 주무부처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주무부처에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보는 제도의 미비로 인하여 수집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외국투자가가 특수목적회사(SPC) 여부에 대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 기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정보수집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료수집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SPC에 대한 정보수집을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제도를 남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조치도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지원제도 때문에 외국인투자가를 가장한 국내 투자가가 있다. 이러한 위장투자자를 필터링하기 위해서는 신고 대리인에 관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다.

현재 통계작성시스템에 결여되어 있는 정확성 확보장치도 새롭게 도입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에 데이터 입력 이후 보도자료 공표 이전까지 오류점검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울러 INSC에의 자료입력의 정확성을 위하여 입력이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통계수립 실무를 위하여 오류점검 및 오류수정 가이드를 발간하여 적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한편 현재 수탁기관인 외국환은행의 입장에서는 외국인투자 신고수리 업무가 법규에 의하여 수행하고 있는 무수익업무이다. 따라서 수탁기관의 자료수집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motivation)를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각 은행의 실적점유율 공개나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하여 경쟁을 유발하여야 한다. 아울러 입력오류가 적거나 투자 신고건수가 많은 은행에 다소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마. 사후관리를 통한 정확성 제고

외국인투자의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하여 통계의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신고은행(주거래은행)을 통하여 도착 및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할 수 있다. 물론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정에 의하여 주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거래은행 업무를 인수 연계하여 끊임없는 관리(seamless monitoring)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이 입지를 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수치와 현실의 괴리를 지속적으로 해소한다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별로 외국인투자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이나 외국인투자의 효과적인 유치 업무 수행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업종별 주무부처의 지속관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 또한 통계목적에도 기여할 것이지만 산업정책적 고려에 의한 외국인투자 유치업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앞에 제시된 두 가지의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수리 시에 업종별 주무부처와 투자기업 입지 지방자치단체에도 신고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고수리업무매뉴얼에 업종별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 연락처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연락처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최초 투자신고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해당은행 관리 하에 변경부터 폐업까지 지속적으로 INSC상 업데이트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주거래은행에 대해서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INSC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신고 사항을 조회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및 변경사항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국제통계기준에의 일치

1) 현황

현재 지식경제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외국인투자 통계는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하지 않은 기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다.

<표2-29> 국제기준과 한국 FDI통계의 비교

		OECD-IMF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일반	작성기준	BPM6·Benchmark Definition	BPM6(현재 1단계 이행)·Benchmark Definition	외국인투자 촉진법	
	수집시점	외환거래시	외환거래시	투자 등록 및 변경시	
	집계기준	순유입	순유입	도착(신고)	
	작성주기	년별	월별	분기별	
정의	투자주체	해외거주자	해외거주자	외국인	
	투자 금액	없음	없음	1억 원 이상 (증액투자 제외)	
	주식취득 비율	10% 이상 (예외 불인정)	10% 이상 (예외 인정)	10% 이상 (예외 인정)	
기업 형태	법인	영리	인정	인정	
		비영리	인정	인정	
	지점	인정	인정	제외	
	간접소유기업	인정	누락	제외	
투자 형태	지분투자	인정	인정	인정	
	채투자 유보이윤	인정	누락	제외	
	기업 간 대출	5년 이상	인정	인정	인정
		1-5년	인정	인정(2006년-)	제외
1년 미만		인정	누락	제외	
기타	장기건설투자	인정	인정	제외	
	개인의 부동산·동산 취득	인정	인정	제외	
	현물투자	인정	인정(2004년-)	인정	
	산업별·투자국별 세부통계	인정(OECD)	누락	인정	
	유형별 세부통계 (Greenfield, M&A, etc)	누락	누락	인정	

자료: KDI(2006), 외국인투자통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성호 외(2007)에서 재인용 하되, 최근 상황을 반영

이러한 문제점은 앞서와는 반대로 외국인투자를 과소 측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선 국제통계기준에서 외국인투자 통계로 집계되는 항목이 상당 부분 제외되고 있다. 본·지점 거래나 외국인투자가로부터의 단기대출이 그 예이다.

2) 문제점

현행 방식에 의하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국제통계기준과 일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IMF나 OECD에 제출하는 통계작성에 애로가 크며 한국은행의 외환거래 자료와 대조하는 가공과정을 거쳐 별도로 작성된 통계를 국제기구에 제출하고 있다.¹¹⁾ 한편 지식경제부가 작성하는 데이터에는 서비스업이 누락되어 있고, 한국은행과 코드가 맞지 않으며, 산업분류도 상이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3) 개선방안

정책목적의 외국인투자 통계와는 별도로 국제수지 관리와 국제기구 보고를 위한 통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FDI 정책 목적(신고기준 원칙), 국제수지 통계 목적(도착기준 원칙)의 두 가지 통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수지 목적의 외국인투자 통계는 OECD Benchmark definition 기준에 부합하도록 통계 작성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 외국인투자 범위의 확대

우선 국제기준에 맞추어 투자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지 말고 재투자유보이윤도 포함하여야 한다. 외국투자가에 의한 단기대출, 장기건설투자, 개인의 부동산·동산 취득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투자기업 범위 확대

또한 지점과 간접소유 형태의 투자기업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11) 진단팀이 작성기관 측에 OECD 제공을 위한 통계가공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제공할 수 없다는 응답을 얻었다.

3. 국민경제 영향 분석 기반의 강화

1) 현황

현행 방식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는 투입·고용 지표 등이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기업고유코드(ID)를 부여하지도 않고 있다. 한편 지경부가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도 조사범위(표본), 조사항목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 문제점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 내용에 포함되는 자료 범위가 국민경제 영향 분석의 필요에 비하여 미흡하다. 또한 지경부가 작성하는 외국인투자 통계나 지경부가 외부위탁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그리고 한은의 외국환관리 통계 간의 연계가 불가능하다.

외국에서는 도시 차원에서도 외국인투자 통계를 통하여 도시경제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런던시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런던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3) 개선방안

외국인투자 정책, 나아가 대외경제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영향이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통계 측면에서 국민경제 분석기반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가. FDI기업명부(register) 작성 및 갱신 관리

지경부나 한국은행을 포함한 정부 공동으로 FDI기업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명부는 실시간으로 갱신 관리되어야 의미가 있을 것이다.

나.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 강화

외국인투자자가 신고한 통계로만은 불충분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행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보강하여

투입·고용 구조에 관한 자료의 수집을 추가하여야 외국인투자의 산업연관 분석 등 국민경제 파급효과를 산출할 수 있다.

아울러 조사된 원 자료는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법적 한도 내에서 연구자나 정책담당관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개별 기업의 자료를 공개하기는 어려우므로 계량적 신고항목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의 세세분류까지 집계하여 공표하고 정성적 신고항목은 응답 유형별로 집계하여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최근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를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신속하게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SPC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모기업 정보도 유형별로 집계하여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신고양식에 투자목적에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경우 국민경제 영향 분석에 유용할 것이다. 실제로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경우에는 투자목적에 기술, 임금, 시장 목적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통계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식경제부 내부에서 원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물만 출력해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지경부가 통계전문기관이 아니므로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에 시행할 수도 있다.

4. 기타 개선과제

1) 현황

외국인직접투자 조사는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에 따른 것으로서 무응답의 경우가 빈번하지 않다. 그러나 일부 응답오류나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공표방법이나 공표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고 이용수요의 파악과 피드백이 미흡하며 품질관리기반도 취약한 상황이다.

2) 문제점

첫째, 응답 오류 및 항목무응답의 문제가 있다. 본 조사에서 응답 오류의 대부분은 신고자가 서류를 잘못 기입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런데 수탁기관과 KOTRA에서 2중의 확인 과정을 거치므로 실질적인 응답오류는 극히 적은 편

이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작성이 다소 어려우므로 입력단계에서 이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항목무응답이 일부 발견되나 실행가능한 대체 방안이 부재하다. 본 보고통계에서 항목무응답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분은 SPC 여부이다. SPC 여부는 통계목적상 조사하는 항목으로 외국인투자거나 대리인이 기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질적 대체 방안은 부재한 편이다.

셋째, 공표방법의 문제이다. 통계자료 공표가 지식경제부의 보도자료와 지식경제부와 통계청 홈페이지 DB 게시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투자사례 단위의 통계 원자료(raw data)에 대한 연구자의 분석 목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넷째, 공표 데이터 범위에도 문제가 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위하여 필요한 모기업 정보 등 수집된 자료 중 많은 항목이 공표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이용수요 파악 및 피드백의 문제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통계의 대사회제공에 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다. 우선 이용자 파악부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홈페이지 자료제공도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선택항목도 많지 않고, 해당정보에 대한 정의도 없으며, 표준산업분류 버전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M&A와 그린필드 투자 간의 구분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여섯째, 지경부나 KOTRA의 품질관리기반이 취약하다. 담당 직원의 수가 부족할 뿐 아니라 통계 품질관리를 위한 전문성도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3) 개선방안

가. 공표방법 다양화

무엇보다 지경부의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DB공개만으로 이루어지는 통계공표방법을 다양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보도자료의 경우에도 현재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만 공표하고 있지만 통계검색 사이트 주소도 수록하여야 한다. 보도자료의 홈페이지 게시 또한 별도의 사이트가 없고 다른 보도자료와 섞여 게시되고 있으며 게시가 누락된 기간도 있어 보도자료 게재도 전용 사이트를 신설하여야 한다. 한편 보도자료 이외에 연간 정도의 별도 간행물(“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을 발간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이 간행물에는 <표 2-29>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통계주기는 현재 분기간이 적절하다는 견해와 (일시적 shock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월간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 후자의 의견은 2012년 5월 현재 기준의 예를 들어 이 시점에서 2012년 1사분기 정보만 이용가능하므로 통계시차가 3개월에 이른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지경부에 원자료 제공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외부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표2-30> “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 (가칭) 수록필요 사항

- 통계작성 기준, 산업분류 또는 직업분류 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 투자기업등록절차 사례집 발간
- 통계DB 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절차
- 통계의 주요 연혁
-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
-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
- 투자실적 항목에 대한 설명 및 기준
- 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및 조사방법(절차)
-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 및 자료수집 양식의 변경 내역 설명
 -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
 - 예: SPC항목 추가,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5천만원→1억원 기준변경
- 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
 - M&A와 Green Field 간 구분, Green Field의 P&A 포함 여부
- 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 잠정치와 확정치의 경우 이유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일자
- 해외투자통계 및 국제기구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등과의 차이점

나. 공표 데이터 범위 확대

상당한 비용으로 수집한 통계를 사장시키지 말고 공표하는 데이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자료수집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세세분류까지 적용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DB에는 중분류까지 집계한 자료만 공표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세세분류까지 세분한 자료를 모두 공표하여야 한다.

또한 보도자료에 형태별로 분류되는 신규, 증액, 장기차관에 관한 정보를 외국인직접투자통계 DB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 규모 이외에 투자목적, 고용인구, 투자형태, 업종별, 지역별 구분을 더

욱 세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다. 통계기반 확충

현재의 외국인투자 통계기반은 매우 취약하여 대폭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외국인직접투자통계 작성과 공표, 조사·분석 등 업무를 담당할 조직 및 인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통계작성 담당자가 증원되고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경부에 1인(비전담), KOTRA에 2인(1인은 전담, 1인은 상담업무 겸무)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의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우 해외경제연구소를 설치하여 통계 작성과 분석 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박사급 6명을 포함한 1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¹²⁾

둘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통계기반 보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FDI통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 발전방안 협의가 추진되어야 한다. 통계담당자 교육도 보강되어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 2회의 교육 중 1회는 지방에서 시행하거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수탁기관 담당자의 편의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자료수집 창구의 통계기반도 보강되어야 한다. 앞서서도 언급되었듯이 외국환은행에 대한 업무 동기부여가 필요하며 신고거부 은행이나 수탁은행 변경 거부 은행은 규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신고양식은 단순화하여 필수기재사항에 한정하고 여타 상세 사항은 수탁기관 담당자가 면담을 통하여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 신고수리 담당자가 창구에서 신고-도착 시점 간 환율변동 위험이나 환율헷지 수단도 안내하여야 한다. 또한 위장투자가를 가려내기 위하여 대리인 진위여부 파악을 위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도 구비되어야 한다.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을 확충하여 접속서버를 업그레이드하고 은행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성도 개선하여야 한다.

라. 이용수요의 파악 및 피드백 강화

현재 외국인투자 통계 담당 기관은 이용수요의 파악이나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통계 품질의 자체 분석 및 개선, 통계이용자 및 잠재수요자 등의 이용수요 파악과 대응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12)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DB는 조건검색과 데이터 피벗이 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매우 편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FGI자료 참조).

매우 취약한 웹을 통한 정보제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조회항목을 OECD와 같은 필터링 형식(현재 병렬식)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조건검색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Web 기반 처리 속도의 개선을 위해 서버, 하드웨어 개선 및 소프트웨어 등 IT기반 업그레이드도 시급하다.

한편 보도자료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DB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한 용어의 불일치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에는 산업별, 보도자료에는 업종별, 홈페이지에는 형태별, 보도자료에는 유형별로 표기되어 일반 이용자에게는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경제의 글로벌화 속도를 감안하여 외국 통계이용자를 위한 영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표 2-31> 통계품질 개선과제 요약

개선과제	실행방법	기대효과	예상되는 문제점	비고*
통계기반 확충 (단기, 중장기)	- 외국인투자통계 유관 기관 협조체계 구축 - 통계담당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행 - 조직 및 인력 보강 - 통계수집·분석 IT 기반 확충	- 품질 향상 추진 가능	- 예산확보 등 애로 예상	p84
자료수집의 정확성 개선 (단기)	- 통계오류 점검절차 신설	- 통계의 정확성 개선	-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	p76
공표 범위의 확대(단기)	- 산업세세분류 집계 통계 제공 - 미공표 수집자료 공표 확대	- 통계이용자 편의 및 통계활용도 제고	- 기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제기 가능	p83
공표방법의 다양화(단기)	- 웹사이트 공표 개선 - 통계·사례집 발간 - 국제기구 제공 통계와의 비교자료 공표	- 통계이용자 편의 및 통계활용도 제고	-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는 외에는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	p82~83
이용수요 피드백 강화 (단기)	- 이용자수요 파악절차 운영 -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원자료 제공 제도화	- 통계이용자 편의 및 통계활용도 제고	- 이용자수요 파악은 별 애로가 없을 것으로 전망 - 기업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제기	p84
통계와 현실 간 괴리 해결 (중장기)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의 접근 확보 -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개선 - 도착기준 투자 측정 전환 - 외국인직접투자 지속 관리 시스템의 정립	- 통계의 현실반영도 제고	- 외환당국의 협조확보 애로 예상 - 정책목적 통계의 지속필요성 제기 가능	p74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중장기)	- 국제기준과의 일치 달성 - 지식경제부 작성통계의 정책목적 부합성 강화	- 국제기준과의 국가간 일치 및 통계의 비교가능성 제고	- 국제수지 목적의 통계이관에 관한 지경부 입장 정리 애로 예상	p79
국민경제 영향 분석자료 확대 (중장기)	- 외국인투자기업 명부 작성 및 갱신 - 외국인투자기업 경영 실태 조사 강화	- 국민경제 영향분석에 대한 통계활용성 제고	-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대한 애로 예상	p80

주 : 단기는 1년 이내, 장기는 2~3년 기간을 의미

제 3 장 개선지원

본 고가 제시한 개선방안의 실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해외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일반적인 통계품질 진단은 개선지원에 관하여 단기에 실행이 가능한 과제를 위주로 한다. 그러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경우 중요한 사항의 개선에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중장기 과제를 제외하면 중요한 사항이 개선지원방안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개선과제를 단기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개선지원방안을 작성하였다.

단기 과제는 개선방안이 비교적 명확하고 지식경제부 자체의 판단에 의하여 비교적 단기간 내에 조치가 가능한 항목을 포함하였다. 한편 중장기 과제는 개선의 필요성이나 방법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에 추가적 협의가 필요하거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법령의 개정을 거쳐야 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개선지원의 가시적 성과를 위하여 단기 과제인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통계오류점검절차 개선, 이용자편의성 제고, 공표범위 확대 등에 강조점을 두고자 한다.

<표3-1> 개선지원 방안 개요

시기구분	단기	중장기
주요 개선방향	단기 통계기반 확충 자료수집의 정확성 제고 공표 범위의 확대 공표방법의 다양화 이용수요 피드백 강화	중장기 통계기반 확충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 해결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국민경제 영향분석 강화

제 1 절 해외사례

1.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Bureau of Economic Analysis)이 법률(International Investment and Trade in Services Survey Act)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응답을 의무화하고 있는¹³⁾ 기업조사에 의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한

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정확한 FDI 통계로 평가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과 외국 모기업의 국제거래와 직접투자 잔액,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무·경영 데이터, 신규 투자 데이터 등 세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집계한다. 특히 FDI의 최근 추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신규투자 데이터가 일종의 정책목적 통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에 의하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수의 보고에 관하여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이행 의무를 부담한다.¹⁵⁾ 이러한 보고이행 의무는 ①미국 자회사(US affiliate: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또는 취득 시의 초기 투자보고(Initial investment report), ②분기별 국제수지 보고(Quarterly balance of payments reports), ③연간 보고(Annual reports), ④ 5년 주기의 벤치마크조사 보고(Quinquennial Reports in benchmark surveys) 등이 있다. 특히 벤치마크조사는 조사대상이 가장 넓은 조사로 자료 누락기업의 데이터를 추정에 의하여 보강하고 있다.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조사항목을 전형적인 보고양식인 연간 정식 보고 양식과 벤치마크 조사를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주요 조사항목을 정리하면 <표3-2>와 같다.

<표3-2> 미국 외국인직접투자통계의 주요 조사항목

연간보고의 정식보고 양식의 항목 (서식 BE-15(LF)(long form))	벤치마크 조사의 추가항목 (연간보고에 비하여 추가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개요: 외국인투자자, 소유·지분 관계 ○ 사업내용: 주요 품목, 산업분류 ○ 대차대조표: 자산, 부채 ○ 손익계산서: 소득, 비용, 이윤 ○ 매출 또는 총운영수입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수지 및 잔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DI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잔액 - FDI기업과 외국인투자자간의 자본흐름 - 투자소득: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배

13)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2), Current Reporting Requirements for BEA Survey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pril 2012.

http://www.bea.gov/surveys/pdf/current_Reporting_Requirements.pdf

14) McNeil(200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Investment in 2006, in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ne 2007, pp.44-51.

15) 미국 상무부 경제분석국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bea.gov/surveys/fdiusurv.ht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투자수익 - 내수, 수출 ○ 고용: 인건비(봉급, 임금, 사내복지) ○ 주요 자산: 토지, 공장, 설비 등 ○ 이자소득·조세 ○ 기술: R&D 투자, R&D 인력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 등 소득지불, 로열티, 라이선스대가, 여타 서비스 대가 ○ 연구개발 지출 ○ 노조 조직화율 ○ 상세 수출·수입 실적: 주요 품목별, 교역상대국별 조사
---	--

자료: 2011 Annual Surve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서식 BE-15A.
2012 Benchmark Survey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서식 BE-12A.

2. 영국

1) 기본통계

영국 통계청(ONS: Office of National Statistics)이 조사에 대한 응답이 법적 의무(compulsory)로 규정되어 있는 매분기·매년 외국인투자기업 대상 조사(AFDI: Annual Inquiry into FDI)에 의하여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한다.¹⁶⁾ 영국 통계청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영국의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조사와 병행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영국의 경우 기업그룹(enterprise group)을 조사단위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 통계인 생산통계조사(Annual Respondents Database)와 연계하여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기업그룹 번호(code) 공유에 의하여 DB를 연계한다. 이 통계는 외국인투자의 금액(investment flows), 잔액(investment positions), 수익(earnings from the investment) 등 외국인투자 기업의 재무흐름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2) 정책목적 통계

London시청의 외국인투자유치기관인 Think London(2006, 2004)의 FDI 영향 분석이 참고할만한 대표적 사례이다.¹⁷⁾ 이 기관은 국가통계청 자료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서베이데이터를 함께 활용하여 외국인직접투자의 런던경제

16) 영국 통계청의 웹사이트를 참고할 것.

<http://www.ons.gov.uk/ons/guide-method/surveys/respondents/business/a-z-of-business-survey/s/annual-inquiry-into-direct-investment-in-the-uk/index.html>

17) Think London(2004), 52 Billion: The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London.; Think London(2004), One in Seven: The Economic Impact of Inward Investment on the London Economy.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분석을 위하여 생산, 소득, 고용에 대한 승수효과의 측정을 위한 경제적 영향 모형(economic impact model)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3. 프랑스

1) 기본 통계¹⁸⁾

국제수지 통계의 일환으로서 외국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통계를 프랑스은행(Bank of France)이 작성한다. 이 통계는 외국인 비거주자가 10%이상의 지분을 가지게 되는 경우의 외국인직접투자를 포함한다.

프랑스은행이 작성하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매월 외국인투자의 금액(investment flows), 잔액(investment positions), 수익(earnings from the investment) 등 외국인투자 기업의 재무 흐름을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국제수지 통계라고 할 수 있다.

2) 정책목적 통계

프랑스은행이 작성하는 통계와는 별도로 FDI의 국민경제 영향 평가를 위하여 대외통상부(Ministry of Foreign Trade) 산하 외국인투자청(IFA: Invest in France Agency)이 외국인투자실적 및 외국인투자의 국민경제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¹⁹⁾

이 기관은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연례 FDI 조사(Annual Review of FDI in France)는 고용의 직접 원천인 투자 프로젝트(greenfield projects), 3년 이상의 장기고용 10개 이상을 창출하는 프로젝트만을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명실상부한 외국인투자만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 프랑스 자본이 2/3이상인 투자는 제외하고 그 이하인 경우에도 외국인지분 비율에 의하여 창출고용수를 계산하였다.

18) Banque de France(2012), Annual Report, the French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n 2011; Banque de France(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lows, Stocks and Income 1999-2011: An overview of French Sources, Methods and Data, available at http://www.banque-france.fr/fileadmin/user_upload/banque_de_france/Economie_et_Statistiques/FDI_overview_2011.pdf.

19) Invest in France Agency(2011), Job-creating foreign investment in France: 2011 Report; Invest in France Agency(2007), 2006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ance.

한편 국제 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의 프로젝트만을 대상으로 하며 비교역재를 공급하는 내수산업은 제외하는 것도 특기할만하다. IFA는 이 보고서의 자료원천으로서 IFA의 외국인투자 모니터자료("Observatoire France"), 투자유치 협의체(COSPE; Project Steering Committee) 수집자료, IFA와 IFA 지역사무소, 지방정부 등의 협조로 집계되는 투자실적 자료 등을 활용하고 있다.

4. 해외사례의 시사점

지식경제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 조사를 확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통계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투자, 생산, 수출 등 이외에도 고용·투입구조 등 조사항목을 보강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미국과 같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를 국제수지 목적과 투자유치 정책 목적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프랑스나 영국처럼 국제수지 목적 통계와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목적의 통계를 별도로 병행하여 작성하는 방안이 있다.

제 2 절 단기 개선과제

<표3-3> 단기 개선과제: 주요 방향별 과제

개선방향	주요 과제내용
단기 통계기반 확충	외국인투자통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통계담당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행
자료수집의 정확성 제고	통계오류 점검 절차 신설
공표 범위의 확대	산업 세세분류 집계통계의 제공 미공표 수집자료의 공표 확대
공표방법의 다양화	웹사이트 공표 개선 통계·사례집 발간 국제기구 제공 통계와의 비교자료 공표
이용수요 피드백 강화	이용자수요 파악절차 운영 이용자 편의성 제고 원자료 제공의 제도화

1. 단기 통계기반 확충

(1-1-1) 외국인투자통계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이전에도 관계기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기적인 협의체로서 FDI통계협의회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과 기관간 협조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FDI통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경부가 주도하되 KOTRA가 간사기관이 되어 지경부, KOTRA,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1-1-2) 통계담당자에 대한 온라인교육 시행

수탁기관 담당자 교육은 이미 상당부분 보완하여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만 지방소재 외국환은행의 사정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수시로 새로운 통계작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오프라인 교육에 참여하는 외국환은행의 본점 담당자 뿐 아니라 지점 등 창구 담당자도 업무에 적용하도록 한다.

2. 자료수집의 정확성 제고

(1-2-1) 통계오류 점검 절차 신설

가. 무응답 및 응답오류의 개선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시스템 상으로 처리되며, 개별자료 입력오류나 보완 등이 신고 즉시 일어나기에 자료 수집이 비교적 정확하다. 또한 개별자료 입력오류도 입력기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편이다. 다만, 한국표준산업상 세세분류코드를 입력하는데 최종자료 집계에서는 세세분류분석을 실시하지 않아 세세분류분석이 필요하지 않다면 대분류코드나 중분류코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SPC 여부 조사에 대해서는 통계생산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자료입력은 수탁기관 담당자에 크게 의존함으로 이들에 대한 교육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탁기관 담당자의 근속 연수가 통상 1년인 관계로 입력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은 년 초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민감한 사항에 대한 응답유도 방법과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대한 교육이 아울러 실시될 필요가 있다.

나. 추가신고 사항 안내

통계오류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수리 시점에 향후 변경이 있는 경우의 추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통계치 오류점검 기능 강화

신고 수리 후 신고사항 입력 및 분석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오류점검 기능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3. 공표 범위의 확대

(1-3-1) 산업세세분류 집계 통계의 제공

기업통계 공표에 있어서 개별기업 관련 통계는 기업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하여 공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정책과 경영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의 구조가 중요한 이슈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이미 수집되고 있으나 공표되지 않고 있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까지 집계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해당 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이 1개인 경우와 같이 기업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상위분류에 의하여 공표하는 보완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1-3-2) 미공표 수집자료의 공표 확대

현재 상당수 통계, 그중에서도 질적 통계는 조사하여 정책수립에 참고할지라도 공표되지 않는 항목이 많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대로 투자목적, 투자형태, 업종별, 지역별 등 구분 별로 모든 통계항목을 집계하여 공표하도록 개선한다.

4. 공표방법의 다양화

(1-4-1) 웹사이트 공표 개선

가. 사이트 배치의 개선

지식경제부 사이트에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에 관한 보도자료가 게시되지만 여러 보도자료가 뒤섞여 있어 그 위치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통계-외국인투자통계’ 계통을 신설한다. 여기에 보도자료 뿐 아니라 메타정보, 보도자료, 통계DB 등을 통합 수록하여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계자료 공표 시기의 일관성 확보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분기별로 발표되지만 발표일자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연간 통계 공표일정을 예고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다. 관련 사이트 업데이트 동조화

현재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게시되는 e-나라지표, 지경부 DB, 국가통계포털 등의 관리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동시 업데이트가 이루어져 혼선을 방지하도록 한다.

(1-4-2) 통계·사례집 발간

가. 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 발간

현재 공표방식이 보도자료에만 의존하다보니 이용자들이 통계 활용에 불편함이 크다. 따라서 우선 연간 1회에 외국인직접투자통계집을 발간하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통계집에는 투자실적 통계 외에도 통계작성 기준, 산업분류 또는 직업분류 기준, 용어해설, 자료 수집 범위 및 절차, 투자항목 등에 대한 설명을 수록하도록 한다. 아울러 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 조사항목 및 그들의 변경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통계이용자의 이해도와 편의성을 개선하여야 한다.

나. 투자기업 등록 사례집 발간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모든 투자내용을 집계하여 통계로 작성하는 노력이 기본이지만 이에 더하여 정책적으로나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투자사례에 관한 정보가 중요하다. 물론 중요한 투자사례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보도되기도 하지만 보도여부는 우연성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일정기간 별로 투자기업의 등록사례집을 발간하도록 하여 주요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향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업무에 참고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4-3) 국제기구 제공 통계와의 비교자료 공표

가. 국제기구 제공자료 공표

현재 지경부가 작성한 외국인직접투자통계는 KOTRA과 한국은행의 협조를 통하여 국제기준에 의한 조정작업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를 IMF와 OECD 등 국제기구에 통보한다. 그러나 현재 공표되지 않고 있는 조정 기준이나 절차,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도록 하여 통계에 대한 인식도와 유용성을 강화하도록 한다.

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국제비교 분석 발표

외국인직접투자의 동향은 세계경제의 공통요인에 의하여 좌우되기도 하고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에 의하여 변동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국내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주요국과 비교·분석하여 발표한다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전망, 한국경제에의 영향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5. 이용수요 피드백 강화

(1-5-1) 이용자수요 파악 절차 운영

가. 이용자 및 잠재 이용자 내역 작성

현재 외국인직접투자를 정책, 경영기획 등 업무에 활용하는 이용자 또는 미래에 이용할 잠재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잠재이용자를 파악하여 그들의 수요를 반영함으로써 통계 이용기반을 확충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계이용자 조사(웹기반 조사) 시행

지식경제부 등 외국인직접투자 통계가 게시되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통계이용자 조사를 상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이용자의 직업이나 전문분야 등을 파악하고 미래 잠재이용자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1-5-2) 이용자 편의성 제고

가. 용어 불일치 해소

보도자료와 DB자료 등 공표방식 간에, 그리고 기간 별로 통계용어 불일치가 발생되고 있다. 국영문 용어 일람표 또는 정오표를 작성하여 용어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온라인 조회방식의 개선

자료 조회항목을 필터링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OECD의 통계DB나 한국수출입은행이 작성하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통계 작성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추진한다.

해외직접투자통계의 경우 조건검색에 의하여 월별, 연도별로 사용자가 원하는 분석항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피벗, 정렬 버튼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자료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도움말이 수록되어 있어,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이콘 설명 및 통계자료 활용법을 수록하고 있다. 특히 통계자료 활용법에는 상세한 사례가 수록되어 있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통계자료활용법



용어설명 조회방법

용어설명

용어사전

전체보기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총 2개의 용어가 검색되었습니다.

- 금액 통계
- 건수 통계

<< < > >>

도움말

- 연도별
- 월별
- 지역별
- 국가별
- 업종별
- 제조업종별
- 주투자자 규모별
- 투자비율별
- 지방자치단체별
- 조건검색
- 년별
- 월별

- * 80년 실적은 68~80년 까지의 누계입니다. (단위: 건, 천미불)
- * 현재 통계는 2008년 6월까지의 투자실적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 * 2007년 9월부터 업종분류 및 건수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 * 업종기준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로 변경되었습니다.
- * 금융보험업 현지법인 및 지점, 사무소 통계자료는 2007년부터 제공됩니다.
- * 기존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를 세분화하여 신규법인수, 신고건수 및 투자건수로 분류하였습니다. 변경 전 신고, 투자건수는 변경후 신규법인수입니다. 현재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하고,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합니다.
- * 본 해외투자통계서비스는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통계 프로그램이 직접 작동하는 관계로 페이지가 1분 이하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통계자료활용법



용어설명 **조회방법**

조회방법

- 기본조회방법
 - > 홈페이지 왼쪽 메뉴화면의 연도별, 월별, 지역별, 국가별, 업종별, 제조업종별, 주투자자규모별, 투자비율별, 지방자치단체별 조회가능
- 조건검색 활용

구분	1	2	3	4	5	6	추가사항	
우즈베키스탄알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시작연도	종료연도	-	-	-	국가 선택	우즈베키스탄 선택	
연도별 세부업종별 투자실적 조회			업종 대/중/소 분류 선택	-	-	-	-	-
중국 산동성에 대한 섬유제품 부문의 연도별 투자추이			-	-	-	1)성,주 선택 2)업종중분류 선택	리포트 실행	1)산동성 선택 2)섬유제품 제조업 선택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국가	-	-	1)투자자지역 선택 2)투자자규모 선택	리포트 실행	1)경기 선택 2)중소기업 선택
유럽연합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	-	지역공동체 선택	리포트 실행	EU 선택

<그림 3-1> 해외투자통계 통계자료 활용법, 용어설명, 피벗정렬 우수사례

아울러 글로벌화의 진전에 따라 해외에서 한국의 외국인투자 통계를 활용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영어버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1-5-3) 원자료 제공의 제도화

가. 외국인투자통계센터 구축

KOTRA에 외국인투자통계센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분석자가 내부에서 원자료에 접근하여 통계분석 결과를 시행한 후 분석결과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원자료 제공절차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나. 원자료제공서비스 기능 위탁

국가승인 통계로 정부재원을 들여 작성된 통계이므로 우선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술 연구 등을 위하여 마이크로 데이터 원자료를 외부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원자료 제공을 위해서 별도의 행정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데이터 서비스 기능을 갖춘 통계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다.

제 3 절 중장기 개선과제

<표3-4> 중장기 개선과제: 주요 방향별 과제

개선방향	주요 과제내용
중장기 통계기반 확충	조직 및 인력 보강 통계수집·분석 IT기반 확충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 해결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의 접근 확보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절차 개선 도착기준 투자 측정 전환 외국인직접투자 지속관리 시스템의 정립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국제기준과의 일치 달성 지경부 작성 통계의 정책목적 부합성 강화
국민경제 영향분석 강화	외국인투자기업 명부 작성 및 갱신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 조사 강화

1. 중장기 통계기반 확충

(2-1-1) 조직 및 인력 보강

가. 외국인투자 통계 작성 전담부서 운영

KOTRA 내에 외국인투자 통계 작성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부서는 외국인투자 연구센터의 역할을 부여하여 통계 작성 외에도 통계분석, 그리고 외국인투자 전반에 관한 동향분석, 정책연구 등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식경제부에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뿐 아니라 기계산업 통계 등 산업관련 국가승인 통계 작성 및 분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나. 인력 보강 및 전문성 제고

외국인투자 연구센터가 설치되면 통계 및 외국인투자 분야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인적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다. 다양한 통계분석 및 생산 기능 확보

KOTRA 및 36개의 국내 수탁은행 별로 건수 및 금액의 추이와 기관별 비중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다양한 2차 통계를 개발하여 생산할 필요가 있다.

(2-1-2) 통계수집·분석 IT기반 확충

가. IT설비·프로그램 업그레이드

통계조직 보강과 함께 INSC서버 등 IT설비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 외환전산망과의 원활한 연계를 설비나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뒷받침하도록 보완히 이루어져야 한다.

나. 은행 전산망과의 호환성 제고

은행 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문제로 서버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 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성을 수시 점검하는 등 전산망 간에 원활한 호환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 통계와 현실 간의 괴리 해결

(2-2-1)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의 접근 확보

가. 한국은행 FDI통계 자료 제공 확대

우선 한국은행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수집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통계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지경부가 수집하는 신고 기준 통계를 도착기준 통계로 전환하거나 신고와 도착을 이원적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이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나. 외환전산망 자료와의 실시간 동조화

우선 외환거래 자료 중에서 지경부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수집의 대상이 되는 자료는 외환전산망 입력과 동시에 실시간 동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연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지경부의 외환전산망 접근 허용

외환거래법령 개정을 통하여 지경부가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접근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2-2)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절차 개선

가. 신고양식 간소화

현재 무응답이 많거나 조사하고도 공표하지 않는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사항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신고 도착 시점에서의 신고의 경우 이전 신고사항을 전자문서로 활용하여 변경, 추가 사항만 기입하도록 하는 등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나. 면담기입 서비스 제공

신고의무자가 직접 기입하는 외에 KOTRA나 외국환은행 등 수탁기관 실무자들이 면담을 통하여 대리 기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고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신고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다. 산업분류 홍보 강화

외국인직접투자의 추세를 이해함에 있어서 업종별 구성이 핵심정보 중 하나이다. 그런데 한국표준산업 분류의 개정이 이루어져도 신고자에 적절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통계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따라서 통계청이 발간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인쇄물이나 면담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참고자료를 이해하기 용이한 방식으로 제작하여 비치, 제공하여야 한다.

(2-2-3) 도착기준 투자 측정 전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하여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후에도 추가 투자가 도착되거나 일부 또는 전부 투자가 철수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2-2-4) 외국인직접투자 지속관리 시스템의 정립

가. 주거래은행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 정립

외국인투자기업 별로 주거래은행에 의한 통합관리시스템을 정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신고, 최초 도착, 추가 투자, 투자 철수 등 반복 거래 시에 주거래은행에 신고하도록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외국환은행이 주거래은행에 통보하도록 하여 주거래은행에 의한 통합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체계 구축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와 연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 이전이나 업종변경 등을 파악하고 투자 도착이나 추가 투자, 철수 등이 실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외국인투자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 국제기준과의 불일치 해소

(2-3-1) 국제기준과의 일치 달성

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 목적 통계 작성

국제수지 목적의 통계 작성은 한국은행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범위의 확대

국제수지 목적의 통계 작성을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2-3-2) 지경부 작성 통계의 정책목적 부합성 강화

가. 규모기준 조정: 현행 1억 원 기준의 상향 조정

국제수지 목적의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한국은행에 위탁하여 작성하게 되면 지경부 통계는 투자유치 정책목적에 더욱 부합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1억 원 이상의 금액 기준은 현실적으로 정책적 의미가 미미한 투자사례까지 포함하게 되므로 이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나. 통계의 이원적 발전 확보 및 신고기준 통계의 명칭 변경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본질적으로 도착기준 통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투자유치 정책 측면에서 보면 사전 신고도 중요하고 사전 신고된 투자사례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도착실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신고 및 도착 기준으로 이원화된 통계가 더욱 각각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현행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명칭은 신고기준 통계를 도착기준 통계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고기준 통계의 경우 측정대상에 부합하도록 “외국인직접투자 도입계획 통계”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4. 국민경제 영향분석 강화

(2-4-1) 외국인투자기업 명부 작성 및 갱신

가. 외국인투자기업별 고유번호 부여

외국인투자의 최초 도착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외국인투자기업명부를 작성하고 기업별로 고유번호(ID)를 부여하여야 한다.

나.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속관리

외국인투자 신고가 발생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소속 사업체의 명부를 KOTRA가 작성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유형별, 지역별 비교분석이 가능하며, 향후 도착기준 금액 통계 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 있는 타 통계생산에 모집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외국인투자기업 명부에 근거하여 기업의 신설, 인수·합병, 업종변경, 철수 등을 반영하면서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2-4-2) 외국인투자 기업 경영실태 조사 강화

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 신고의무 강화

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1차적으로 투자유치 업무나 정책수립에 반영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에의 영향 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실태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 투입구조·고용에 대한 조사항목 추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항목에 투입구조 및 고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여야 한다. 투입구조 및 고용 등의 자료가 있어야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경제에 대한 산업별 생산·부가가치 유발, 직종별 고용유발 등에 대한 파급효과 등 영향의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기업 경영실태조사, 각년도.
- 매일경제(2011), 외국인직접투자 최대라더니, 2011. 3. 28
- 산업연구원(2006), 외국인투자 중장기 비전과 전략, 산업자원부 정책연구 보고서.
- 지식경제부(2011), 매일경제 “외국인직접투자 최대라더니”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 2011. 3. 29.
- 최성호 외(2007),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통계청(2012), 국가통계품질관리매뉴얼.
- 통계청(2009), 통계품질관리 이렇게 합니다.
- 한국개발연구원(2006), 외국인투자통계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정책연구보고서.
- 한국은행(2007), 외국인직접투자 조사표, 각년도.

<해외문헌>

- Banque de France(2012), Annual Report, the French Balance of Payments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in 2011; Banque de France(2012),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Flows, Stocks and Income 1999–2011: An overview of French Sources, Methods and Data.
-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06),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Final Results from the 2002 Benchmark Survey, October 2006.
-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12), Current Reporting Requirements for BEA Survey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pril 2012.
- IMF(2009), The Balance of Payments Manual, 6th edition(BPM6).
- IMF(1993), The Balance of Payments Manual, 5th edition(BPM5).
- Invest in France Agency(2011), Job-creating foreign investment in France: 2011 Report; Invest in France Agency(2007), 2006 Report on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France.

Lee, Siwook & Yong-seok Choi(2005), Improving Measurement of FDI: The Case of Korea, Presentation at the UNCTAD Expert Meeting on Capacity Building in the Area of FDI, Korea Development Institute, 2005. 12.

McNeil(200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New Investment in 2006, in Bureau of Economic Analysis, Survey of Current Business, June 2007, pp.44-51.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Summary Quality Report for Foreign Direct Investment Annual Surveys Releases, May 2010.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olving UK companies, 2010 Release.

Think London(2004), 52 Billion: The Valu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London.; Think London(2004), One in Seven: The Economic Impact of Inward Investment on the London Economy.

<웹사이트>

- 1 미국상무부 경제분석국 홈페이지 <http://www.bea.gov/surveys/fdiusurv.htm>
- 2 통계품질관리 홈페이지 <http://quality.nso.go.kr>
- 3 통계품질관리시스템(DB) <http://codi.stat.go.kr>
- 4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 5 영국통계품질 프로그램 <http://www.statistics.gov.uk/quality>
- 6 영국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ons.gov.uk/>
- 7 영국노동시장 통계 <http://www.statistics.gov.uk/product>
- 8 OECD <http://www.oecd.org>
- 9 Eurostat <http://www.epp.eurostat.cec.eu.int>

< 부 록 >

수집자료 정확성 점검 결과보고 (보고통계)

부	문	국제수지·외환		
통	계	명	외국인직접투자	
승	인	번	호	11520
작	성	기	관	지식경제부
품질진단팀	연구	원	최성호	
	연구	보조	안승호	

제1부 점검계획

- 점검을 위해 채택된 점검방법, 대상, 내용, 일정 등에 대하여 기술

1. 점검 방법			
<p>외국인직접투자 통계는 다음과 같은 통계자료 수집과정을 거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외국인투자자는 수탁은행 혹은 KOTRA에 투자신고서를 작성·제출 ○ 수탁은행 혹은 KOTRA는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INSC, Investment Notification Statistics Center)에 입력 ○ 입력된 자료는 KOTRA 전산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취합되며, 이후 KOTRA 담당자에 의한 입력자료 재확인 ○ 지식경제부에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여 보도자료를 발간 <p>최초 신고자의 신고이후 자료를 실무자가 시스템에 입력하는 부분 이외에는 모두 전산으로 처리가 이루어진다. 이번 점검에서는 수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입력을 담당하는 실무자, 신고자료 오류를 검토하는 책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오류 점검을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를 받아 입력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자가 신고서를 잘못 작성해 온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점검 - 자료 입력 중 오타 및 신고서와 입력된 자료간 금액차이 발생 여부 점검 - 자료 입력 이후 재검토 여부 점검 ○ 투자기업 사후관리 여부 			
2. 면담(현장방문) 일정			
일시	면담대상자/참석자	장소	주요 점검사항
5월22일	신한은행/ 실무자	신한은행 본점 회의실	자료 입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사항 점검
5월22일	외환은행/ 책임자 실무자	외환은행 본점 회의실	본사 내 관리, 시스템관리, 자료 수집 관리 점검
5월29일	하나은행/ 실무자	하나은행 본점 회의실	정기교육 참석 여부 및 자료 입력과정 점검
5월29일	SC제일은행/ 실무자	SC제일은행 본점 회의실	자료입력 후 검토여부 점검
5월30일	대구은행/ 실무자	대구은행 본점 회의실	자료의 정확성 점검
5월30일	경남은행/ 관리자 실무자	경남은행 본점 회의실	시스템 이용 및 입력에 있어 애로사항 점검
5월31일	부산은행/ 실무자	부산은행 본점 회의실	교육 참석 여부 및 업무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점검
6월5일	우리은행/ 실무자	우리은행 본점 회의실	고객들이 신고서 작성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점검

제2부 점검결과 요약

○ 점검결과 주요 문제점 및 개선의견 정리

구 분	문제점	개선의견
외국인직접투자 신고서 작성의 애로	원장 내용변경에 있어 기존주 양도, 신주 취득 등 양식이 복잡하여 고객들이 양식에 잘못 기입해 옴	신고양식을 간소화하고 보고양식의 상세한 내용은 수탁기관 담당자가 면담을 통하여 기입하는 방안 등 강구
수탁기관 교육	지방은행의 경우 교육의 참석이 용이하지 않음	시행되는 2회의 교육을 1회는 수도권, 1회는 지방으로 나누어 실시
제반 환경	자료 입력을 위해 INSC에 접속할 때, 간혹 접속이 불안정함	접속 서버(server)개선, 은행보안 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점검
환율	개인 투자자의 경우 주로 1억 원에 맞춰 투자를 함. 신고와 도착 시점이 달라질 경우 환율 차에 의해 도착 시점에 금액이 미달되어 추가 금액이 필요한 경우 발생.	개인에게 환율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거나 환위험 헤지수단을 안내
사례집	다양한 업종과 정부 혜택에 따라 신고양식 기입 및 입력의 난이도가 높음	투자기업 등록 절차에 관한 사례집을 발간
정확성	외국인직접투자자는 주로 대리인이 신고. 개인투자자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의 대리인인지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음	대리인에 관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를 구비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가 신고자들에게 홍보가 잘 되어 있지 않아 서술형으로 적어오는 신고자가 많음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홍보 및 사례집 발간
	법령상 투자 업종에 관련된 주무부서에 신고서 및 관련 자료를 보내게 명시되어 있으나 시행되지 않음	업종별 주무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 정보를 매뉴얼에 수록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동기부여	해당 조사는 개별은행에 의해 이루어지는 무수익 업무로, 수탁기관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필요	수탁기관에게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체 신고건수 대비 경쟁사, 자사의 현재 담당비율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하여 동기부여
외국계 은행	1.외국계 은행의 경우 내부 규정상 도착금액이 해당은행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지 않는 은행이 있음 2.기업이 신고-도착 이후 수탁은행 변경을 요청하더라도 받아 내부 규정상 받아주지 않음	신고접수 거부 및 수탁은행 변경 요청 거부에 관한 규제가 필요
사후 관리	투자 변경, 철수 등에 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신고, 도착은행을 동일화 혹은 변경 및 철수를 함에 있어 신고의무를 부과

제3부 점검결과 종합

- 점검결과를 통해 현장조사의 오류 유형과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방안 기술

- 자료수집의 정확성 개선

- 신고양식을 간소화하고 보고양식의 상세한 내용은 수탁기관 담당자가 면담을 통하여 기입하는 방안 등 강구
- 외국인투자가 및 수탁기관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홍보 및 참고자료 제공
- 매뉴얼에 업종별 주무부서 연락처 정보를 포함하여 수탁기관이 주무부서에 해당 정보를 전달하여 유기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방안 강구
- 현재는 투자자가 SPC에 대한 정보제공을 꺼리는 경우 정보수집을 하지 않지만, SPC에 대한 정보수집을 의무화하여 자료수집의 일관성 확보
- 외국인투자가를 가장한 국내 투자자를 필터링하기 위해 대리인에 관한 위임장 양식 및 절차를 마련
- INSC에 데이터 입력 이후 보도자료 공표 이전까지 오류점검 절차 마련
- 복잡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사례들을 모아 사례집 발간

- 외국인직접투자통계 프로그램 접속의 불안정

- INSC 프로그램 점검 시 사전에 수탁기관에 공지
- 접속 서버 환경 개선 및 추가 구축
- 은행 보안프로그램과의 호환성 여부 점검

- 전무한 사후관리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최초 투자신고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유지할 의무를 부과 하여 해당은행 관리 하에 변경부터 폐업까지 지속적으로 INSC상 업데이트를 실시
- 한편 주거래은행에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여 INSC 프로그램에서 입력된 신고 사항을 조회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및 변경사항 업데이트
-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관된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투자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에도 신고서를 제공하여 은행과 함께 관리할 수 있게 제도화

- 수탁기관 교육

- 지방에 있어서 교육 참석이 어려운 은행을 대상으로 하여 지방교육 실시
- 은행에 업무가 바빠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을 못한 실무자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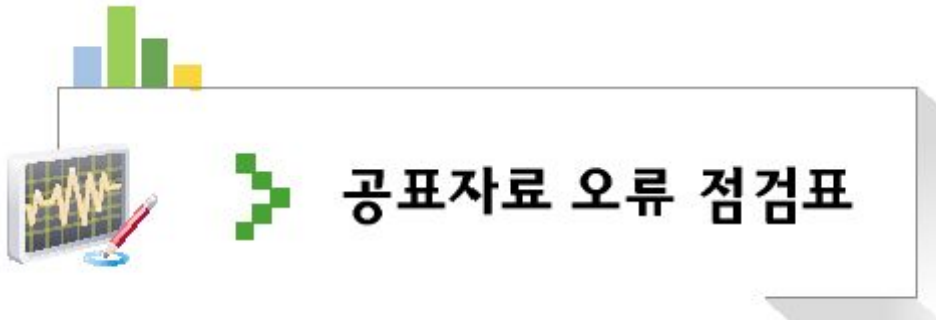
- 수탁기관 동기부여

- 무수익 업무지만 전체 신고건수 대비 각 은행의 실적점유율 공개 또는 유공자 포상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 경쟁 유발
- 입력오류가 적거나 투자 신고건수가 많은 은행에 인센티브 지급
- 신고접수 및 수탁은행 변경 거부를 하는 은행은 규제

- 신고, 도착 시점의 차이에 따른 환율 변동

- 개인에게 환율변동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
- 환위험 헤지수단을 안내

부록 2. 공표자료 오류 점검표



공 표 자 료 명	‘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2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붙임) ‘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붙임)				
공 표 시 기	12년 4월 6일 11년 1월 13일				
공 표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년	⑤ 부정기

부 문	국제수지·외환	
통 계 명	외국인직접투자	
승 인 번 호	11520	
작 성 기 관	지식경제부	
진 단 일 자	2012년 6월 15일	
품 질 진 단 팀	연 구 원	최 성 호
	연구보조	안 승 호

1. 수치자료

진 단 항 목	적 절	부 적 절	오 류 내 용/비 고 (별 도 첨 부 참 고)
1-1. 통계작성기관의 통계간행물과 통계 DB의 수치 일치 여부 - 최근 발행된 간행물과 자료생산기관의 DB를 비교하여 점검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통계간행물에 발간된 자료중 DB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 및 부정확한 수치가 확인됨 - 별도첨부 1 참고
1-2. 시계열 자료의 일관성 - 시계열 자료에 단절이 없는지 확인 - 단절이 있는 경우 그 사실 및 원인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1962년부터 자료의 단절 없이 시계열의 연속성을 지님
1-3. 통계개편 등으로 인한 통계작성방법 변경이 공표자료에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여부 - 통계작성방법이 메타자료에서 기술한 통계작성 방법과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2010년 10월 5일 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국인투자의 금액기준이 5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작성방법이 변경되었으나 보도자료에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이 없음 - 2008년 이후 메타자료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음 - 별도첨부 2 참고
1-4. 통계수치의 정확성 - 통계표의 가로합/세로합 불일치 확인 - 통계표에 비상식적인 수치 확인 - 시계열 상의 이상치(과대, 과소 수치)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별도첨부 3 참고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비고 (별도첨부 참고)
2-1. 통계표 형식의 통일성 - 통계표상 한글, 영문의 표기 위치, 방법 등의 통일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별도첨부 4 참고
2-2.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의 일치성 - 항목과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 다른 통계를 인용한 경우 출처에 있는 통계표와 일치여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통계표에 수록된 항목과 내용이 일치함
2-3. 통계표에 사용된 기호의 적절성 - 통계표의 내용 이해에 꼭 필요한 기호들이 알맞게 표기되고 있는지 또는 누락되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기호들을 사용하였음

2. 통계표 형식 및 내용 (계속)

진 단 항 목	적 절	부 적 절	오 류 내 용/비 고 (별도첨부 참고)
2-4. 통계수치 표기의 일관성 - 통계표 내 항목별 소수 자리 및 반올림 일치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소수 자리 표기에 있어 내림, 반올림, 올림을 혼재하여 사용 - 별도첨부 6 참고
2-5. 단위 표기의 적절성 - 명, 개, % 등 통계표의 내용이해에 꼭 필요한 통계단위가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 - 적절한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지, 인용된 통계의 경우 출처의 단위와 일치하는지, 단위 환산이 정확한지 등 확인 - 단위 표기가 통계표의 일관된 위치에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통계단위들을 사용 하였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단위 사용이 적절하며 보도 자료에 인용되는 통계가 없음
2-6. 주석 표시의 합리성 - 통계표 이해에 꼭 필요한 주석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 - 주석과 통계표의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7. 자료 출처의 명확성 - 인용한 통계표의 출처가 명기되었는지 확인 - 출처기관과 출처간행물이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2-8. 도표, 그림 등의 정확성 - 도표나 그림이 정확한 수치로 작성되었는지 확인 - 도표나 그림 등이 오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수치에 알맞은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되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원기둥 그래프 수치 오류 - 별도첨부 5 참고 - 도표나 그림이 적절한 크기나 영역으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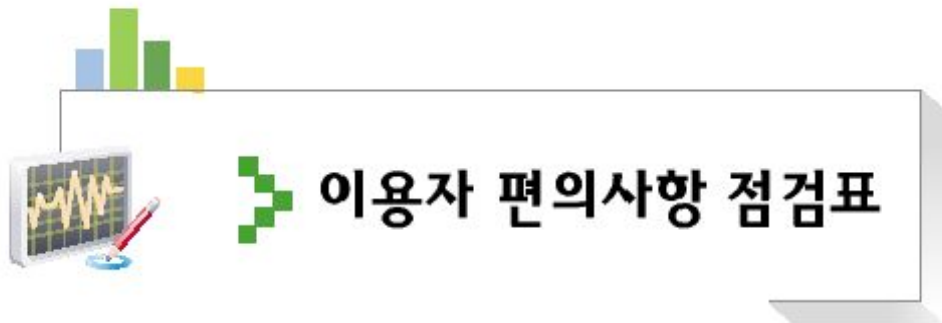
3. 용어해설 부분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별도첨부 참고)
3-1. 용어정의의 적절성 -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 M&A, Green Field 등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와 분류기준이 기준을 제시되어 있지 않음.
3-2. 인용한 통계의 경우,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일치성 - 자료를 제공한 기관의 간행물과 비교해서 동일내용에 대한 용어사용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 (영문 표기 포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3-3. 용어의 통일성 - 간행물 전체적으로 동일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여 지속성을 지님

4. 기타 오류

진 단 항 목	적절	부적절	오류 내용/ 비고
4-1. 목차, 색인 등과 본문의 일치성 - 통계표의 목차와 본문의 제목 및 페이지가 일치하는지 확인 - 색인에 표기된 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 확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목차 및 색인이 수록되어 있지 않음
4-2. 한글 및 영문 표기의 적절성 - 맞춤법, 오타, 누락, 영어단어 표기 등을 확인 - 의미에 맞는 영문 표기 여부, 영문 설명 시 문장이나 단어의 누락 등으로 의미가 왜곡되는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맞춤법, 오타, 누락, 영단어 표기 등에 있어 적절함 - 영문이 일부 용어를 제외하고 사용되지 않아 의미 왜곡이 없음
4-3. 통계표 제목의 적절성 - 제목이 통계표 내용을 대표하며 내용에 적합한지 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통계내용과 제목이 적절함

부록 3.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표



발 간 물 명	20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발 간 시 기	2012.1.13				
발 간 주 기	① 월	② 분기	③ 반기	④ ()년	⑤ 부정기

부 문	국제수지·외환	
통 계 명	외국인직접투자	
승 인 번 호	11520	
작 성 기 관	지식경제부	
진 단 일 자	2012년 5월 28일	
품질진단팀	연구원	최 성 호
	연구보조원	안 승 호

1. 이용자를 위하여

진 단 항 목	근거자료	의견
1-1. 소개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이용시 유의사항」 등 이용자를 위한 소개부분이 있다.	-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하고 있어 「이용자를 위하여」,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등과 같이 이용자를 위한 소개정보를 결여하고 있음
1-2. 부록(참고자료) 통계자료 활용에 참고 되는 내용을 부록으로 실고 있다. ·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분류기준, 용어해설 등의 참고자료 수록	-	간행물 없이 보도자료만 공표하고 있어 통계작성기준, 산업 또는 직업 분류기준, 용어해설 등 참고자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1-3. 기호 통계표 등에 사용되는 각각의 기호들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다.	별도 첨부 1.	기호의 의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증감, 백분율과 같이 간단한 기호만 사용하고 있고, 자료 아래에 통계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 기호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1-4. 잠정치, 확정치 통계간행물에 잠정치를 수록할 경우 잠정치의 표시 및 설명과 확정치의 공표 예정 일자를 명시하고 있다. · 잠정치로부터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잠정치 산출이유와 확정치 공표 시점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눈에 잘 띄는 부분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별도 첨부 2.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여 공표하지 않고 도착금액의 잠정치 추계방식의 설명이나 확정치의 공표예정 일자 등 설명이 없음 - 신고기준 통계 작성 및 공표에 그치고 있어 기간 경과 후 확정된 외국인투자 금액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실정임
1-5. 자료 출처 통계간행물에 수록된 통계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출처를 이용자들의 눈에 잘 띄게 간행물에 수록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보고통계를 집계한 것으로 별도의 자료출처가 없음
1-6. 제공 매체 통계간행물 이외의 다른 매체를 통해 자료가 제공되는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 · 통계DB이용방법, 인터넷 사이트 주소, 마이크로데이터 구매절차	별도 첨부 3.	유일한 공표매체인 보도자료에 지식경제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고 있으나, 통계 DB 및 관련 웹사이트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는 수록되지 않음
1-7. 문의처 통계작성방법과 자료 수집방법에 대한 추가 정보를 문의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 통계작성 또는 조사체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이 있는 개별 직원에게 직접 연락되어야 한다.	별도 첨부 4.	통계작성담당 부서(투자유치팀) 과장, 사무관, 주무관 등 담당 직원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음

2. 조사정보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2-1. 통계작성 목적 통계작성의 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유사통계와 차이점 포함	별도 첨부 5.	통계작성 목적은 제시하였으나, 해외투자통계 및 국제기구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등과의 차이점은 설명하지 않고 있음
2-2. 통계 연혁 통계의 주요 연혁을 설명하고 있다.	-	보도자료에 통계연혁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2-3. 통계작성 범위(대상)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	자료수집 범위와 구체적인 대상에 대한 설명이 없음
2-4. 적용 기준 국내·외 통계자료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자료수집에 적용된 국내 또는 국제적 기준과 그 내역을 설명하고 있지 않음
2-5. 작성 항목 작성항목을 나열하고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별도 첨부 6.	투자실적을 항목별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주요 항목에 대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음
2-6. 작성 주기 대상기간, 기준시점, 작성주기, 실제 조사(보고)기간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	대상기간이나 작성주기는 알 수 있으나 기준시점이나 실제 자료수집기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2-7. 자료수집 방법 조사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별도 첨부 7.	조사·수집으로 만들어진 자료입은 밝혔으나, 조사방법(절차)은 명시하지 않음.
2-8. 자료수집 체계 현지에서 자료수집 하는 체계를 설명하고 있다. · 조사체계, 보고체계 등	-	통계청 홈페이지 메타자료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만 설명되어 있음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p>2-9. 자료수집 양식 견본</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을 수록하고 있다.</p>	-	<p>자료수집 양식을 수록하고 있지 않음</p>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보도자료는 물론 통계청 홈페이지 메타자료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도 수록되지 않아 일반이용자가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p>
<p>2-10. 자료수집 양식 변경 내역</p> <p>자료수집 양식(조사표, 보고양식 등)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보고)항목 변경사항, 연도별 추가·신설 항목 등 변경내역의 설명 수록 여부 	-	<p>자료수집 양식의 변경 내역이 설명되어 있지 않음</p>
<p>2-11. 용어 설명</p> <p>보고서에 수록된 주요 용어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별도의 용어 설명 란의 할당 여부 등)</p>	-	<p>Green Field, M&A와 등 항목의 전문 용어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음</p>
<p>2-12. 공표 방법</p> <p>결과의 공표 방법, 향후 공표일정의 예고 등이 있다.</p>	-	<p>향후 공표일정 등이 보도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p>


3.모집단 및 표본설계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3-1. 목표 모집단 통계작성이나 표본추출을 위한 목표 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모집단이란 통계분석 단위에 대한 개념적인 모집단을 의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2. 조사 모집단 조사나 통계작성의 실제 조사모집단을 명시하고 있다. · 조사모집단이란 실제로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조사단위의 모집단을 의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3. 모집단의 근접성 목표 모집단과 조사모집단이 근접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 모집단의 커버리지(Coverage)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4. 표본틀(표본조사) 표본추출에 사용되는 표본틀을 설명하고 있다. · 표본틀이란 표본이 추출되는 단위들의 목록을 의미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5. 표본크기(표본조사) 표본설계 당시 목표로 하는 표본크기와 실제 조사된 표본을 명시하고 있다. · 목표 표본의 크기는 표본설계 시에 제시했던 표본크기임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6. 표본틀의 변경(표본조사) 표본틀의 변경여부 및 내역을 설명하고 있다. · 조사대상의 발생, 소멸 변동사항(예: 산업분류의 변동)등을 고려하여 표본틀을 갱신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7. 표본틀 요약 정보(표본조사) 보고서에 표본틀의 주요 변수에 대한 요약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3-8. 표본설계 방법(표본조사) 층화표본추출 등과 같은 표본설계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자료집계 및 추정

진 단 항 목	근거 자료	의견
4-1. 가중치 통계자료를 작성할 때 사용하는 가중치의 부여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모수를 추정할 때 또는 통계자료를 결합할 때 등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2. 모수추정 방법(표본조사) 표본조사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3. 표본오차 추정치 제공(표본조사) 표본조사의 경우에 표본오차의 추정치(표준오차, 변동계수 등)를 제공하고 있다. · 모수추정치에 대한 신뢰구간을 산출하는데 표본오차 추정치가 어떻게 사용되며, 신뢰구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4. 계절조정 기법 시계열에서 계절요인, 불규칙요인 등을 조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5. 품질수준 정보 표본오차, 비표본 오차, 대표도 등 통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6. 무응답 현황 무응답 현황(항목무응답, 단위무응답)을 보여주는 통계표를 제시하고 있다. · 최소한의 무응답 유형(부재, 응답거부 등)을 제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7. 응답자 분석 응답자와 무응답자 그룹간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 · 수집자료의 편향(bias)정도를 설명	해당 없음.	해당 없음.
4-8. 자료집계 무응답 항목을 보완하는 대체(Imputation)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별도 첨부

위 치	내 용
<p>1. '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붙임자료 2p</p> <p>2. '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2p</p>	<p>별도 첨부 1.</p> <p>- 간단한 기호만을 사용하고 있고 자료 아래에 통계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붙이고 있어 기호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음</p> <p>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중 화공, 금속, 기계·장비, 전기·전자 등에 대한 투자는 증가한 반면(각각 97.6%, 350%, 23.4%, 11.8%), 의약, <u>운송용기계</u> 등에 대한 투자는 감소(각각 △87.2%, △87.1%) <p>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선진국 증가(33.6% ↑), 신흥국 감소(3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U·美·日 등 선진국 투자 증가 ○ (업종별) 서비스업 증가(15.4% ↑), 제조업 감소(1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류,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 ○ (유형별) <u>그린필드형</u> 투자 증가(5.8% ↑), M&A 정체(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u>그린필드형</u> 소폭 증가 ○ (형태별) 신규(10.9% ↑)·증액(2.7% ↑) 투자 증가, 장기차관(22.4% ↓)은 감소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1p</p>	<p>별도 첨부 2.</p> <p>- 잠정치와 확정치를 구분하여 공표하지 않고 있으며 도착 금액의 잠정치 추계방식의 설명이나 확정치의 공표예정 일자 등 설명이 없음</p> <p>□ (동향) '11년 외국인직접투자액(신고기준)은 '10년 130.7억불 대비 4.6% 증가한 136.7억불 기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금액(잠정)은 전년(54.1억불) 대비 18.3% 증가한 64억불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1p</p>	<p>별도 첨부 3.</p> <p>- 보도자료에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는 나와 있으나, 통계 DB자료 사이트 및 보도자료를 바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 주소는 나와 있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right: 10px;"> <p>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p> </div> <div style="margin-right: 10px;"> <p>보도자료</p> </div> <div style="flex-grow: 1; 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p>http://www.mke.go.kr</p> </div> </div>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1p</p>	<p>별도 첨부 4.</p> <p>- 자료에 대해 문의를 할 수 있는 작성자 및 담당자의 전화 번호가 수록되어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자료문의 : 유법민 투자유치과장(02-2110-5361), 박성우 사무관(5365), 김신덕 주무관(5362)</p> </div>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붙임자료 1p</p>	<p>별도 첨부 5. - 통계작성 목적은 제시하였으나, 해외투자통계 및 국제기구 제공 외국인직접투자 통계 등과의 차이점은 설명하지 않고 있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동 자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조사·수집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p> </div>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보도자료 2p</p>	<p>별도 첨부 6. - 선진국, 신흥국, 산업의 업종분류, 투자의 유형, 형태로 분류하여 비교하는데, 그 분류의 기준 및 체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별) 선진국 증가(33.6% ↑), 신흥국 감소(31.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EU·美·日 등 선진국 투자 증가 ○ (업종별) 서비스업 증가(15.4% ↑), 제조업 감소(15.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통·물류, 금융·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분야 투자 증가 ○ (유형별) 그린필드형 투자 증가(6.8% ↑), M&A 정체(2.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장, 사업장 설립 등 고용창출과 관련한 그린필드형 소폭 증가 ○ (형태별) 신규(10.9% ↑)·증액(27% ↑) 투자 증가, 장기차관(22.4% ↓)은 감소
<p>'11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붙임자료 1p</p>	<p>별도 첨부 7. - 법에 의해 조사·수집되고 있음을 명시하였으나,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수집이 되고 있는지는 설명하지 않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p>동 자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4조에 따라 조사·수집 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p> </div>

부록 4. 외국인투자 신고양식(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0.5>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외국투자자	① 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 주소(영문)
	③ 국적

외국인 투자기업	④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⑤ 자본금(출연금)	취득(출연) 전	취득(출연) 후
	⑥ 사업지등록번호(본사)		
	⑦ 주소	본사	전화번호
		공장 또는 사업장	전화번호
		금번 투자지역	전화번호
	⑧ 하려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세 세분류(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신고내용	⑨ 금번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원(USD	상당),	%	
	⑩ 투자형태	[]법인 설립([]신규, []증액)	⑪ 투자목적	[]공장 설립·증설		
		[]개인사업([]신규, []증액)		[]사업장 설립·증설		
		[]비영리법인 출연([]신규, []증액)		[]인수합병		
	⑫ 투자방법	[]현금, []자본재	현금	원 (USD	상당)	
		[]주식, []부동산	자본재	원 (USD	상당)	
[]채권, []산업재산권 등		기타	원 (USD	상당)		
⑬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⑭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원			%	
	취득가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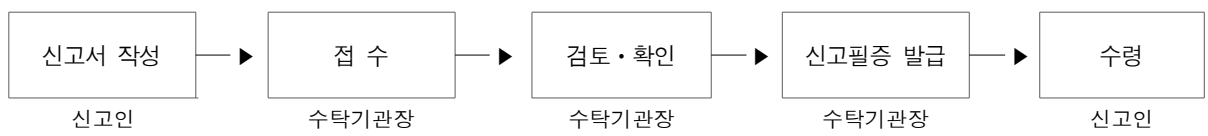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p>첨부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평가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라목의 출자 목적물을 출자(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라 분배되는 남은 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마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의 주식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출자하려는 부동산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아목의 출자목적물을 출자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6.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 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출연하려는 비영리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최초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p>수수료 없음</p>
-------------	--	-------------------

유의사항

이 신고필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작성방법

①~③란에서 외국투자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으로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고,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모두 적습니다.

④란은 외국투자자가 출자하려는 기업(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합니다)의 상호 또는 명칭을 적습니다.

⑤란에서 자본금(또는 출연금)은 외국인투자 전과 후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전체 주식등의 원화액면금액(또는 전체 출연금액)을 적습니다.

⑥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⑦란에서 주소는 본사와 공장(또는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되, 제조업인 경우에는 공장주소(공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고,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연구소를 포함합니다)의 주소(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⑧란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려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⑨란은 금번에 외국투자자가 출자(또는 출연)하는 취득가액(미화인 경우에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과 그 비율[금번 출자(또는 출연)]로 증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금(또는 출연금)에 대해 외국투자자 납입자본의 액면가액(출연의 경우에는 출연금액을 말합니다)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합니다)을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⑩란은 주된 투자형태를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법인 설립(신규): 외국투자자가 순수 내국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에 참여
- 법인 설립(증액):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에 참여
- 개인기업(신규): 외국투자자가 개인사업체에 최초 투자
- 개인기업(증액): 외국투자자가 개인사업체에 추가 투자
- 비영리법인 출연(신규): 외국투자자가 순수 내국비영리법인의 출연에 참여
- 비영리법인 출연(증액): 외국투자자가 비영리법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출연에 추가 참여

⑪란은 주된 투자목적을 1개 항목만 선택합니다.

- 공장 설립: 제조업(제조업과 비제조업을 함께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사업장 설립: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을 시설에 투자하거나 단순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인수·합병: 해당 기업이 외국인투자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지분이나 자산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경우

⑫란은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의 형태를 구분하여 출자목적물(또는 출연대상)별로 그 취득가액을 적고, 주식·부동산·채권·산업재산권 등은 해당란에 [v]표시하고, 기타 항목에 취득가액을 적습니다.

※ 유의사항: 출자목적물 중에서 채권의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바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만을 말합니다.

⑬란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취득할 주식 또는 지분의 내용(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적되, 취득총액은 ⑩란의 취득금액과 일치하도록 적고,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⑭란에서 액면가액(비영리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투자한 액면가액과 ⑭란의 액면총액의 합계를, 취득가액은 ①란의 외국투자자가 기존에 투자한 취득가액과 ⑩란의 취득가액의 합계를 적고, 비율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또는 전체 출연금)에 대한 ①~⑭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또는 ①란의 외국투자자의 출연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내용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이미 신고된 외국인 투자내용	신고일			
	외국인 투자기업명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		
		국적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USD	상당), %
	투자방법			
	하려는 사업명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소				

변경 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제1항 또는 제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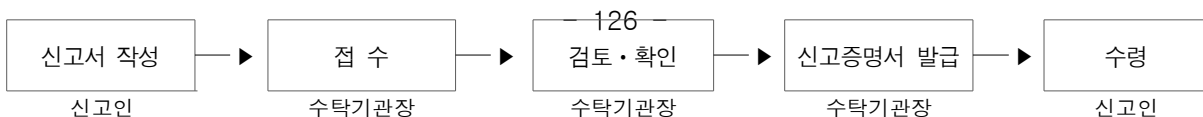
수탁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6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이 신고확인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0.5>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 []신고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	-----	-----	------	--------------------

주식 등 발행기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전화번호:)
	④ 공장(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⑤ 하고 있는 사업	⑥ 자본금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신고(신청)접수기관 기재란]		

신고(신청) 내용	⑦ 주식(지분)취득자 (외국투자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주소	⑧ 국적 전화번호	
	⑨ 주식(지분)양도자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⑩ 금번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취득가액 : 원(USD 상당), %		
	⑪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	종류	1주(좌)당 액면가	1주(좌)당 취득가액
		수량	액면총액	취득총액
	⑫ 금번 취득 후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액면가액: 원 취득가액: 원(USD 상당)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전단·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번호:

[]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허가조건:

년 월 일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 사본 1부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3. 출자하는 주식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0항 각 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사목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자하고 기존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이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①~③란은 주식(지분)취득자가 취득하려는 주식등을 발행한 국내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를 본사 기준으로 적습니다.

④란은 주식(지분)의 발행기업이 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공장주소(공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주소를 적습니다)를, 비제조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주소(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주소를 적습니다)를 적습니다.

⑤란은 주식(지분)의 발행기업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고,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⑥란은 주식(지분)의 발행기업의 납입자본금을 원 단위까지 적습니다.

⑦~⑧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지분)을 취득하게 될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적을 적고,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주식(지분)의 취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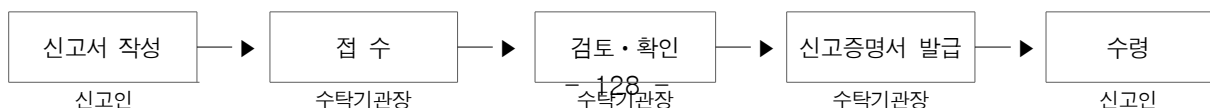
⑨란은 ⑦란의 주식(지분)취득자에게 주식 등을 양도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으로 적고, 양도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양도 규모 순으로 대표적인 양도자 및 전체 양도자 수를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습니다.(예시 : 홍길동 외 2명)

⑩란은 주식(지분)취득자가 투자하는 금액과 비율을 적습니다. 비율은 주식(지분)의 발행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금번 외국인이 취득하는 소유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미화는 투자신고 당시의 환율로 계상합니다). 주식(지분)취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⑪란은 ⑦란의 주식(지분)취득자가 취득할 주식(지분)의 내용을 적되, 취득총액은 ⑩란의 취득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취득금액이 외화인 경우에는 원화로 환산하여 적고, 주식(지분)취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⑫란에서 액면가액은 주식(지분)취득자의 기존투자 액면가액과 ⑪란의 액면총액 합계를, 취득가액은 주식(지분)취득자의 기존투자 취득가액과 ⑩란의 취득금액 합계를 적으며, 비율은 주식(지분)의 발행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⑦란의 주식(지분)취득자가 소유하는 총 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0.5>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내용변경 []신고서 []허가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고: 즉시 허가: 15일
------	-----	-----	------	-------------------

주식취득신고(허가)일	년	월	일
-------------	---	---	---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

주식등 발행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상호 또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변경내용	이미 신고(허가)된 내용	변경 후 내용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6조제1항 후단·제3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또는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수탁기관장(또는 지식경제부장관) 귀하

신고(신청)인 귀하

신고(허가)번호:

[]위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위의 신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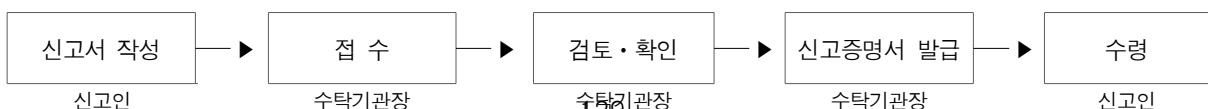
지식경제부장관(또는 수탁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수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수인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주식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이 신고확인증(허가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2.10.5>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	-----	-----	------	----

외국인투자 자기 업	① 상호 또는 명칭	국문 영문	② 사업자등 등록 번호 (본사)	
	③ 주 소	본사 (전화번호:)	④ 자본금	취득 전
		공장(사업장) (전화번호:)		취득 후
	⑤ 하고 있는 사업			
※ 한국 표준산업 분류상세세분 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외국투자 자	⑥ 상호 또는 명칭	⑦ 국적
	⑧ 주소 (전화번호:)	

취득한 주 식(지분) 의 내역	⑨종류	⑩수량	⑪1주(좌) 당 액면가	⑫액면총액	⑬취득가액	⑭취득총액

⑮ 취득사유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 [] 무상증자 [] 배당 [] 상속·유증 [] 합병 [] 기업분할 []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 기타()
--------	---

⑯ 취득 후 외국인투자가 소유주 식(지분)의 수량, 금액 및 비 율	주(좌)	액면가액: 원	%
		취득금액: 원(USD 상당)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1.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수수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없음
	3.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기존의 외국인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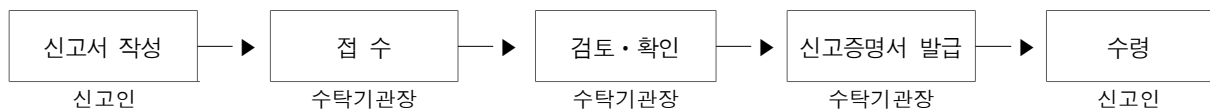
유의사항

이 신고확인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작성방법

- ①란은 외국투자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취득하려는 주식등을 발행한 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국문과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전 상호 또는 명칭 및 합병 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을 함께 적습니다.
- ②~③란은 주식등 발행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본사 기준으로 적고, 주소는 본사와 공장(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공장(사업장)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공장(사업장)주소를 적습니다.
- ④란은 주식등 발행기업의 자본금을 주식취득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원화로 적습니다.
- ⑤란은 주식등 발행기업이 하고 있는 사업명을 적습니다. 복수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요 사업 순으로 4개까지만 사업명을 적습니다.
- ⑥~⑧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주식등을 취득한 외국인(개인 또는 법인)의 국적을 적고 상호와 주소는 반드시 영문으로 적습니다. 주식(지분)취득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⑨~⑭란은 ⑥란의 외국투자자가 금번에 취득한 주식(지분)의 내용을 적습니다. ⑩란의 취득가액은 1주당 취득가를 적습니다.
- ⑮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내용 중 금번 주식등의 취득사유를 선택하여 적습니다.
- ⑯란은 취득 후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수량 및 액면가액·취득총액을 적습니다. 비율은 주식등 발행기업의 총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의 비율을 적습니다. 외국투자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투자가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2.10.5>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신고서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차 관 도입자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전화번호:)			
차 관 제공자	상호 또는 명칭(영문) 주 소 (영 문)		국 적	
차관의 내 용	차관금액		원 (USD 상당)	
	차관조건	거치기간 연 이자율	상환기간 기 타	
차관방법	현 금	자 본 재	기 타	
차관용도	금번 투자지역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내용	이미 신고된 내용		변경 후 내용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수탁기관장 귀하

신고인 귀하
신고번호:
위와 같이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기관장

직인

첨부서류	내용	수수료
첨부서류	<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차관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해외모기업이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변경신고인 경우> 1. 해외모기업 또는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차관제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외국투자가 또는 그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 변경계약서 사본 1부 4. 차관제공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차관제공자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이 신고확인증은 외국인투자자금의 도착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